



2·0·1·2 계약심사 사례집



2013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9. 6 ~ 10. 20(45일간)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9. 27 ~ 11. 10(45일간)



목 차

I. 계약심사 일반	5
1. 계약심사제도 개요	7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8
3. 계약심사 대상사업	9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10
5. 계약심사 처리 실적	11
II. 주요 계약심사기준 마련 사례	13
1. 소파블록(TTP) 제작용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15
2. 합성라멘교 합성부재 제작 설치	23
3. 화강석 석재판 보도 블록 포장	31
I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39
1. 토목공사	41
2. 건축공사	81
3. 전기공사	95
4. 기계·통신·소방공사	109
5. 건설기술용역	123
6. 일반용역	141
7. 물품구매 및 제조	155
8. 인 쇄	183
9. 시군 자체 계약심사	189
IV. 부 록	221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23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241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287



계약심사 일반

1. 계약심사제도 개요	7
2. 계약심사부서의 역할	8
3. 계약심사 대상사업	9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10
5. 계약심사 처리 실적	11





1. 계약심사제도 개요

◆ 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 절감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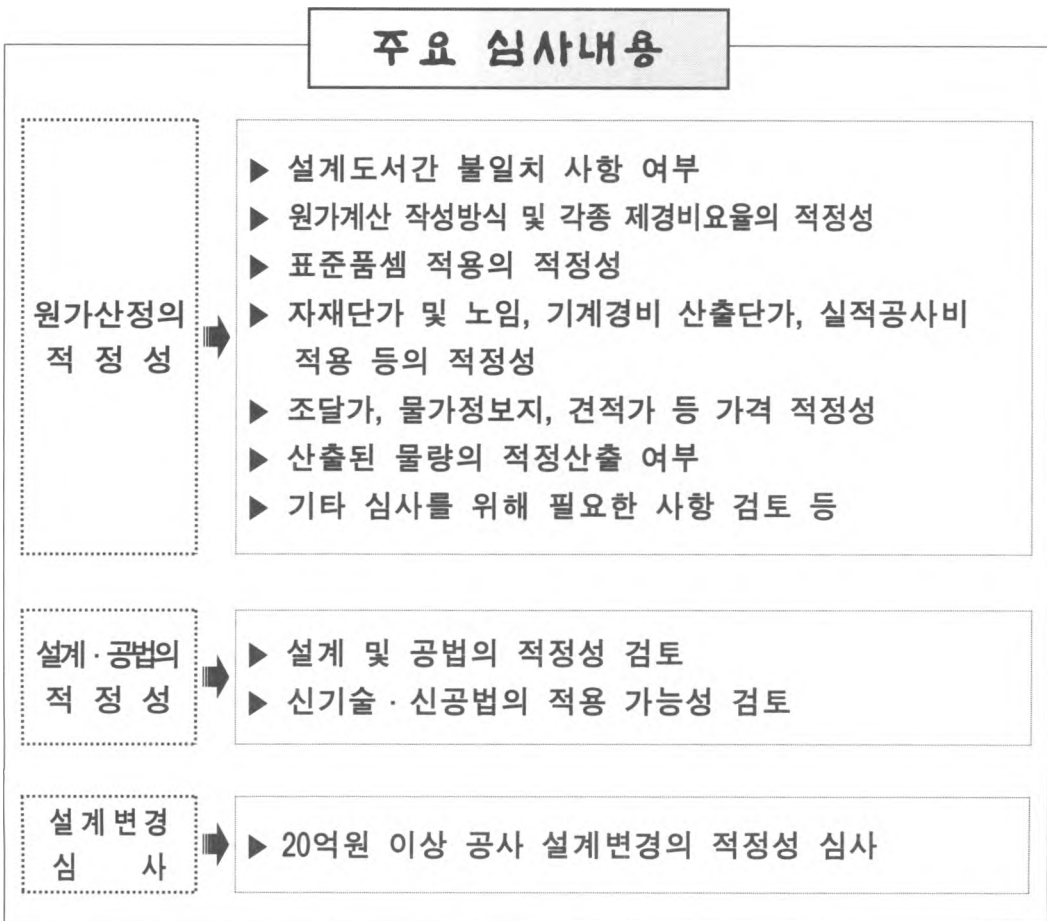
◆ 추진경과

- 2008. 3 :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 마련(행안부)
- 2008. 5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 통보(행안부)
- 2008. 7 : “계약심사과” 직제신설
- 2008. 9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 2011. 1 : “계약기술심사과” 부서명칭 변경
- 2012. 1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감사관실 일상감사담당” 신설
- 과폐지 2담당 신설(계약심사담당 : 시군, 일상감사담당 : 도본청)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의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원가계산 방식·제경비 효율·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심사
- 자재단가(조달견적가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심사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심사





3. 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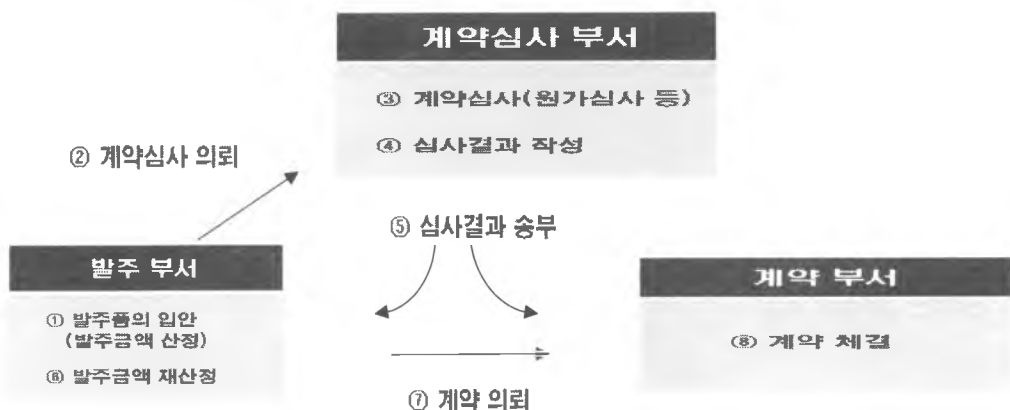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 도 본청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 •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시 · 군 〉 • 국도비 재배정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건설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학술 및 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구매 · 제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심사제외 대상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 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예, 상품권, 유류 등)
-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작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



◆ 업무처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시·군 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 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 → 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사무관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전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사무관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 등 포함), 실적 DB 관리



5. 계약심사 처리 실적

◆ 총 괄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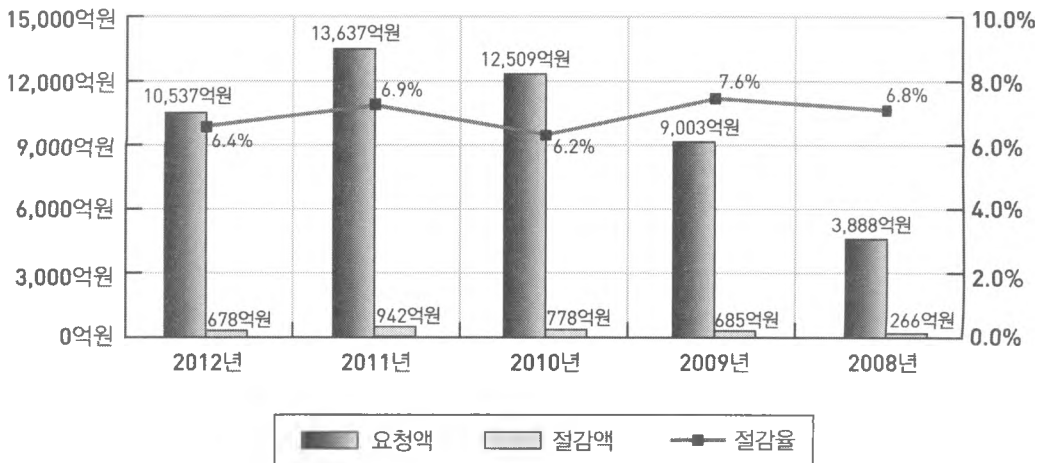
연도별	건 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3,929	4,957,347	4,622,501	334,846	6.8
2012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2011	1,068	1,363,703	1,269,521	94,182	6.9
2010	879	1,250,870	1,173,114	77,756	6.2
2009	628	900,346	831,819	68,527	7.6
2008	293	388,754	362,195	26,559	6.8

○ 사업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계	2,038	300,677	6.9	787	29,785	5.5	1,104	4,384	6.0
2012	504	61,293	6.8	204	5,476	4.6	353	1,053	4.0
2011	571	87,795	7.2	197	5,523	4.7	300	864	4.8
2010	521	68,136	6.2	181	8,955	6.5	177	665	7.2
2009	281	59,257	7.9	154	8,299	5.9	193	971	7.5
2008	161	24,196	6.8	51	1,532	5.9	81	831	12.3

○ 연도별 변동추이



◆ 2012년 심사실적

○ 사업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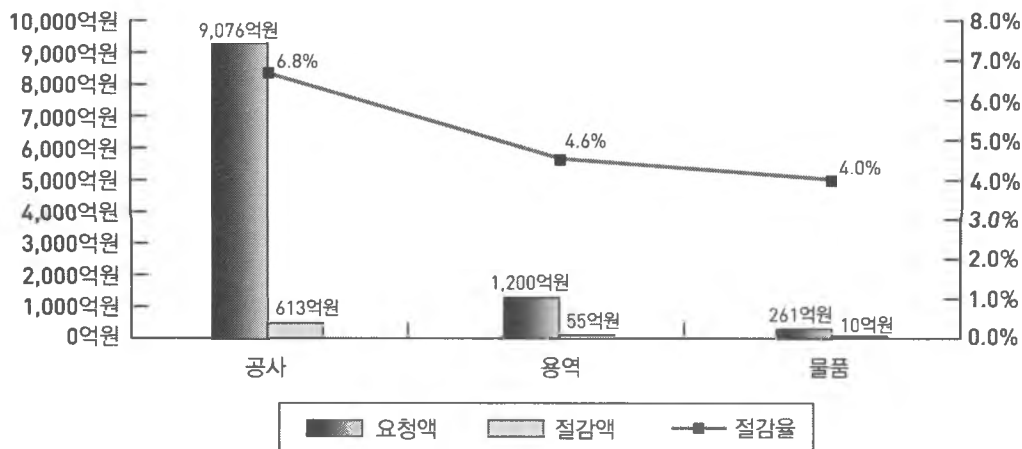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비 고
계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공 사	504	907,556	846,263	61,293	6.8%
용 역	204	119,992	114,516	5,476	4.6%
물 품	353	26,126	25,073	1,053	4.0%

○ 발주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비 고
계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본 청	132	161,927	152,733	9,194	5.7%
사 업 소	144	20,966	20,117	849	4.0%
출연기관	62	40,895	38,437	2,458	6.0%
시 · 군	723	829,886	774,565	55,321	6.7%

○ 사업별 변동추이





Ⅱ

주요 계약심사기준 마련 사례

1. 소파블록(TTP) 제작용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15
2. 합성라멘교 합성부재 제작 설치 23
3. 화강석 석재판 보도 블록 포장 31



소파블록(TTP)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설계 적용 개선방안 검토

※ 위 설계적용 개선방안 사례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를 위한 참고자료
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남 도
(회 계 과)



소파블록(TTP)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설계 적용 개선방안 검토

소파블록(TTP) 제작용 강재거푸집 거치·해체 작업 시 현장 시공 상황과 다르게 인력 거치 및 해체 품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① 관련기준

○ 표준품셈 6-3-4 강재거푸집

- 1. 인력거치 및 해체
- 2. 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

※ 주로 교량의 교각 및 코핑부위에 적용함

※ 강재 거푸집 사용회수는 복잡한 구조인 경우 30~40회 사용

○ 항만공사 적산 기준 표준사례집(1999.12. 국토해양부, 한국항만협회)

제2장 블록공사 2. 제작

- TTP 톤수에 따른 보통인부 적용

공종	단위	TTP 규격별 적용수량 /개당					비고
		2ton	8ton	10ton	16ton	20ton	
보통인부	인	0.74	2.11	2.5	3.39	4.0	

[주] ① 보통인부는 철재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기계력, 환산 포함) 품임

② 현 실태

- 표준품셈의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품은 주로 교량 공사에 적용하는 품으로 TTP 제작에 적용할 경우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 설계 시 항만공사 적산 기준 표준사례집을 적용하고 있음



II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① 현설계의 문제점

- 항만공사 적산 기준 표준사례집은 기계력 환산하여 인력 품을 산정하였으나, 실 시공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음
- 또한 TTP는 제작 수량이 많은 경우 강재거푸집의 사용횟수를 감안하더라도 실 시공 일 작업량이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시공 전경



②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쇼파블럭(TTP) 10ton 제작은 장비와 인력 조합 품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시공사	○ 쇼파블럭(TTP) 10ton 제작은 장비와 인력 조합 품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③ 착안사항

- TTP는 제작 수량이 많은 경우 강재거푸집의 사용횟수 및 표준품셈의 유사품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품을 적용

III 개선방안심사기준

① 검토내용

- TTP 제작 수량, 제작장 여건, 강재거푸집의 사용횟수 및 양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 시공량 5개/일(10ton 기준)으로 장비 및 인력 품을 조정
- TTP 규격별 거푸집 면적을 기준으로 품을 조정

② 설계기준 별 단가 비교(TTP 10ton 기준)

구분	품셈기준		항만공사 적산 기준 표준사례집 (개당)	개선방안 (개당)	비고
	인력(100m ² 당)	장비조합(100m ² 당)			
인력	형틀목공 6.2인 비 계 공 9.0인 보통인부 12.0인	형틀목공 10.46인 비 계 공 5.08인 보통인부 3.38인	보통인부 2.5인	형틀목공 0.2인 비 계 공 0.2인	
장비	-	크레인(10ton) 14.91hr		크레인(5ton) 1.6hr	
문제점	인력 거치 및 해체 품으로 설계 다소 과다계상	교량의 교각부 적용 품으로 설계 과다계상	인력 거치 및 해체 품으로 설계 과다계상		
시공사진					
단가	27,592원/m ²	35,727원/m ²	182,020원/개 11,903원/m ²	111,753원/개 7,037원/m ²	

※ TTP 10ton 1개당 거푸집 면적은 15.88m²/개

③ 개선방안(기준안)

○ 당초 설계안(항만공사 적산기준 표준사례집, 1999.12. 국토해양부)

공종	단위	TTP 규격별(ton) 적용 수량 /개당															비고
		2	3.2	4	5	6.3	8.0	10	12.5	16	20	25	32	40	50	64	
보통인부	인	0.74	1.21	1.24	1.47	1.73	2.11	2.5	2.98	3.39	4.0	4.9	5.39	6.86	7.59	8.61	

○ 개선안(심사기준)

공종	단위	TTP 규격별(ton) 적용 수량 /개당															비고
		2	3.2	4	5	6.3	8.0	10	12.5	16	20	25	32	40	50	64	
형틀목공	인	0.07	0.09	0.11	0.13	0.15	0.17	0.20	0.23	0.27	0.32	0.37	0.43	0.50	0.58	0.69	
비계공	인	0.07	0.09	0.11	0.13	0.15	0.17	0.20	0.23	0.27	0.32	0.37	0.43	0.50	0.58	0.69	
크레인	hr	0.55	0.74	0.87	1.01	1.16	1.38	1.60	1.86	2.17	2.54	2.95	3.42	4.04	4.68	5.50	
거푸집면적	m ²	5.42	7.32	8.62	10.00	11.52	13.74	15.88	18.46	21.54	25.19	29.29	33.90	40.08	46.44	54.59	

[주] ① 강재거푸집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② 작업수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을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제작장 부지 구성에 필요한 경비는 또는 부지 임대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강재 거푸집 사용회수는 “토목표준 품셈 제6장 콘크리트 6-3-2 강재 거푸집 1. 인력 거치 및 해체”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IV 적용방안

○ 계약심사 중·항후 건에 대하여 본 심사기준 적용

○ 개선사례에 대한 시군 및 관련기관 전파

붙임 1. 단가 비교표 및 단가산출서 1부.

2. 시공 사진 1부. 끝.



붙임 2. 시공사진

시 공 사 진



강재 거푸집 거치 전 박리제 도포



강재 거푸집 거치(조립)



강재 거푸집 거치(볼트 조임)



콘크리트 타설



강재 거푸집 해체



야적장 내 이동 및 선적

합성라멘교 합성부재 제작 설치 설계 적용 개선방안 검토

※ 위 설계적용 개선방안 사례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를 위한 참고자료
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남 도
(회 계 과)



합성라멘교 합성부재 제작 설치 설계적용 개선방안 검토

합성라멘교의 부재 제작·설치 시 정모멘트부재(경간중앙부)와 부모멘트부재(모서리부)가 다르게 제작·설치되고 있음에도 합성보(Preflex Beam) 제작·설치 품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① 관련기준

- 표준품셈 6-4-2 프리플렉스 빔 제작
 - 1. 제작대 설치 2. I-GIRDER 세팅 3. 하중재하 4. 하중제거
- 표준품셈 17-1 용접교 제작
 - 17-1-1 표준제작 공수(용접교)
- 표준품셈 6-6 교량 가설공
 - 6-6-1 PSC 빔 가설공 6-6-3 빔 회전 및 적치

② 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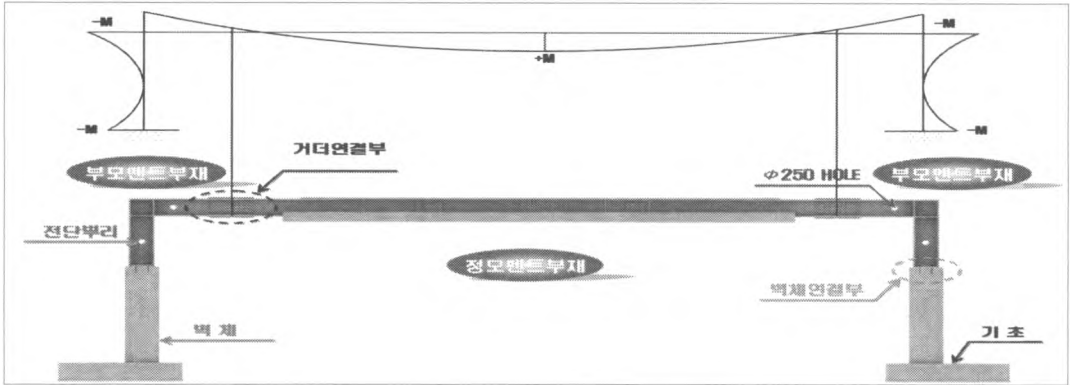
- 합성라멘교의 부재 제작·설치 시 합성보(Preflex Beam) 제작·설치 품을 적용
- 실제 시공 시 부모멘트부재(모서리부)는 일반부재로 제작·설치하고 있음



II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1 현설계의 문제점

- 합성라멘교는 정·부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로 구성



- 정·부모멘트 부재를 모두 합성보(Preflex Beam) 제작 품을 적용함으로써 설계 과다 적용

2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강재 제작에서 부모멘트부재는 철공가공조립 단가를 적용 하되, 강재 총중량 및 작업난이도에 따른 품을 증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강재 현장 설치 품은 표준품셈 건축부문의 철골 세우기 품을 적용하였으나 현장 시공 여건을 감안하여 철골공, 비계공외에 특별인부, 보통인부를 추가적으로 투입함이 타당함
시공사	○ 부모멘트 부재는 합성부재가 아닌 일반부재로 설계함이 타당함

3 착안사항

- 시공순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부모멘트 부재는 일반부재로 구조계산 하고 H-Beam 철골구조를 공장제작하여 현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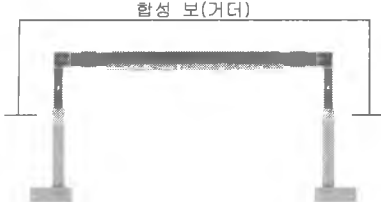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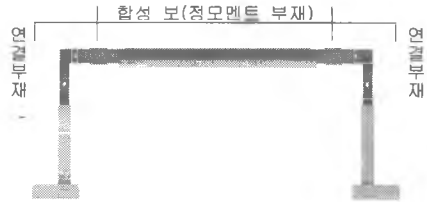


III 개선방안(심사기준)

① 검토내용

- 정모멘트 부재는 합성보(Preflex Beam) 제작 설치 품을 적용하고,
- 부모멘트 부재는 강재 제작 시 철골가공조립 품을 적용하되 강재총중량 및 작업난이도에 따라 25~55% 품을 증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모멘트 부재 현장 설치 시 철골세우기 품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맞게 특별인부와 보통인부를 추가로 계상

② 개선방안

구 분	설계안(당초)	개선안(심사)
공 종	○ 정·부모멘트 부재 - 강재 용접교 제작(품셈 17-1) - 빔 가설공(품셈 6-6-1)	○ 정모멘트 부재 - 강재 용접교 제작(품셈 17-1) - 빔 가설공(품셈 6-6-1) ○ 부모멘트 부재 -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 철골세우기(현장세우기)
표준단면도		
단가	2,570,765원/ton	2,086,910 원/ton

IV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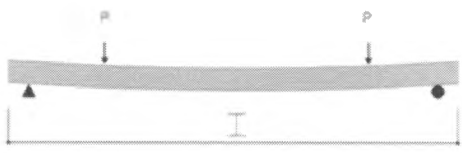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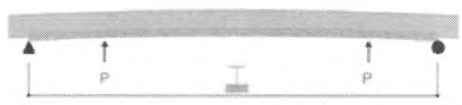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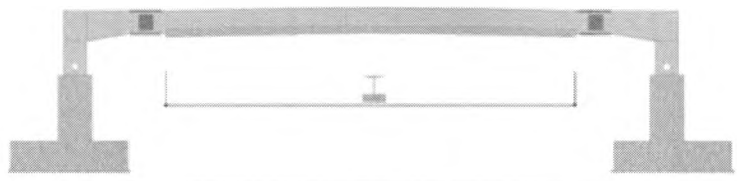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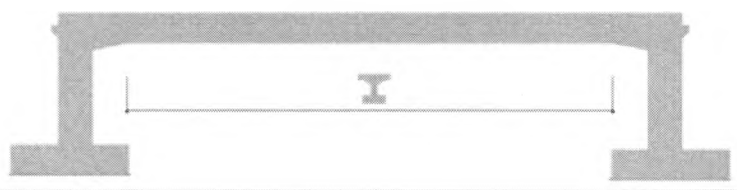
- 계약심사 중·향후 건에 대하여 본 심사기준 적용
- 개선사례에 대한 시군 전파

- 붙임 1. 시공순서도 1부.
2. 시공 사진 1부.
3. 단가비교표 및 단가산출서 각 1부.



붙임 1

시공순서도

단 계	시 공 순 서
1 단계	최종 CAMBER에 의한 정모멘트부재 I - GIRDER 제작 및 부모멘트부재 제작 부모멘트부재 정모멘트부재 부모멘트부재 
2 단계	정모멘트부재 프리플렉션 하중의 재하 
3 단계	정모멘트부재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타설·양생 후 릴리즈 
4 단계	부재 연결 및 거치 (벽체부 하부공사는 상부 부재제작과 병행시공) 
5 단계	구체 및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6 단계	포장 ⇒ 교량완공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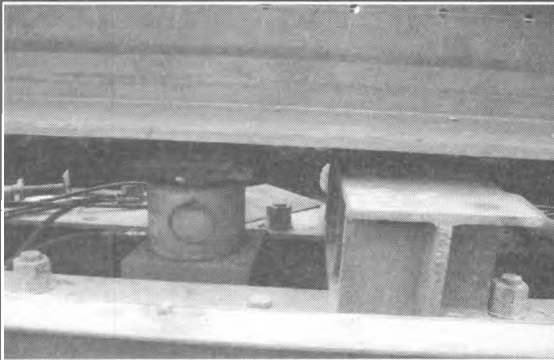
시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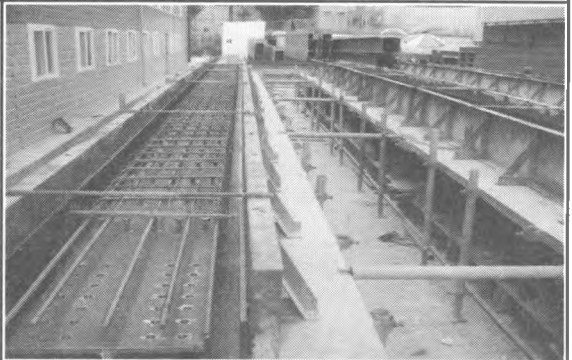
강재 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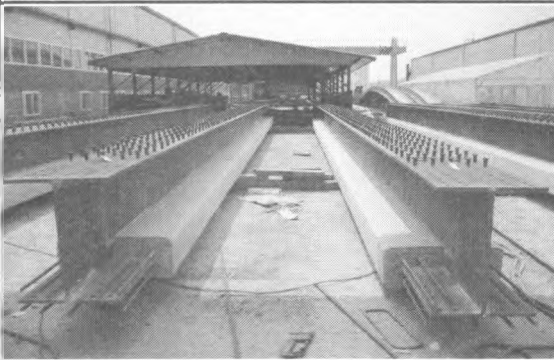
정모멘트 부재 용접 및 철근 배근



정모멘트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정모멘트 하부 콘크리트 타설



정모멘트 부재 완성



부모멘트 부재 현장 설치

화강석 식재판 보도 블록 포장 설계 적용 개선방안 검토

※ 위 설계적용 개선방안 사례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남 도
(회 계 과)



화강석 석재판 보도 블록 포장 설계적용 개선방안 검토

화강석 석재판 보도 블록 포장은 적용 품이 없어 건축부문의 석재판 붙임이나 토목부문 도로공사 보도 블록 포장 품을 적용하고 있어 설계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현장 시공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1 관련기준

○ 표준품셈 토목부문 12-3-3 보도용 블록 포장(과소 계상)

배치인원		사용기계(1대)		시공량 ^{m²}		비고
		명칭	규격	형식	시공량	
특별인부	2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30×30×6cm	370	
보통인부	4	굴삭기	0.6m ³			

[주] ① 본 품에는 보도용 블록 포장의 모래포설 및 다짐과 블록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 기층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블록 절단품은 포함되어 있다.

⑨ 곡선부나 지장물이 5%이상인 경우 시공량을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표준품셈 건축부문 10-1-1 석재판 붙임 습식공법(과다 계상)

(m ² 당)				
종류	구분	석공 (인)	보통인부 (인)	비고
화강석	바닥	0.40	0.20	설계적용
	평벽	0.46	0.36	

[주] ① 본 품에는 현재재단 및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모르타르, 바름두께, 철물에 대한 수량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모르타르 비빔품은 포함한다.

**② 현 실태**

- 화강석 석재판 보도 블록 포장의 적용 품셈이 없어 유사품으로 건축부문의 석재판 품이나 토목부분의 보도 블록 포장 품을 설계에 적용

II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① 현 설계의 문제점**

- 건축부문의 유사품 화강석 석재판 붙임 품을 적용할 것 경우 직선구간이 많은 보도블록 공사 특성 상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실 시공 현장 여건과 부합되지 않음
- 또한 토목부분의 유사품 보도용 블록 포장 품을 적용할 경우 화강석 현장 재단, 모르타르 비빔 품이 누락되어 단가가 과소하게 계상되고 있는 실정임

②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화강석 보도블록 포장에 대한 품이 없어 건축부문의 석재판 붙임 품을 적용하였으나 다소 품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시공사	○ 화강석 판석 두께에 따라 품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상가나 주택가의 보도는 기층 콘크리트 포장 시공 시 레미 콘믹서트릭 진입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포설 품의 적정 계상이 필요함

③ 착안사항

- 화강석 석재판 붙임 보도 블록 포장은 직선구간으로 정형화되어 작업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고,
- 또한 화강석은 현장재단이 어려우며 모르타르 비빔 등 작업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품이 필요



III 개선방안심사기준

① 검토내용

- 실 시공 현장조사(일 시공량 14~15m³)와 문화재 품셈의 전돌갈기 및 바닥 돌붙임(일본 국토교통성 '11 건축 품셈) 등의 유사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화강석 석재판 붙임에 대한 합리적인 단가 기준 마련
- 도심부 상가나 주택지 등 교통 및 작업 조건이 어려운 경우 인력 품을 15~4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도 블록 기층에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레미콘 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설계 기준별 단가 비교

구분	설계안		개선(안)
	건축부문(과다계상)	토목부문(과소계상)	
인력	석 공 : 0.4인 보통인부 : 0.2인	특별인부 : 0.0074인(2인/270) 보통인부 : 0.0148인(4인/270)	석 공 : 0.14인 미 장 공 : 0.10인 보통인부 : 0.02인
장비		플레이트 1.5ton, 굴삭기 0.6m³	
할증			- 지장물 조건 0~40%
단가	62,733원 / m²	5,021원 / m²	29,783원 / m²
시공 사진			



② 개선방안(심사기준)

구분	화강석 석재판 보도블록 포장					
설계안(당초)	(㎡당)					
	종류	구분	석공 (인)	보통인부 (인)		
	화강석	바닥 평벽	0.40 0.46	0.20 0.36		
개선안(심사)	(㎡당)					
	구분	규격	석공 (인)	미장공 (인)	보통인부 (인)	비고
	화강석 보도블록 포장	30×30×5cm	0.14	0.10	0.02	
	화강석 보도블록 포장	30×30×3cm	0.12	0.08	0.01	
	[주] ① 공구손료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도심부 상가나 주택지 등 교통 및 작업 조건이 어려운 경우 인력 품을 15%~40%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품은 포함하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층 콘크리트는 레미콘믹서트럭이 진입이 어려운 경우 표준품셈 12-3-2 콘크리트 표층 1. 인력시공 품을 적용하되 일 시공량을 50% 감하여 적용한다.					
단가(원/㎡)	62,733원/㎡		29,783원/㎡			

IV

적용방안

- 계약심사 중향후 건에 대하여 본 심사기준 적용
- 개선사례에 대한 시군 전파

- 붙임 1. 단가비교표 및 단가산출서 각 1부.
2. 시공 사진 1부.



붙임 2

시공 사진



보도 노상 정리



보도 노상 다짐



기층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비빔 및 화강석 바닥 깔기



화강석 바닥 깔기



완공 사진



Ⅲ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41
2. 건축공사	81
3. 전기공사	95
4. 기계·통신·소방공사	109
5. 건설기술용역	123
6. 일반용역	141
7. 물품구매 및 제조	155
8. 인 쇄	183
9. 시군 자체 계약심사	189



1. 토목공사

• ○○○○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43
• ○○지구 배수개선사업	45
• ○○지구 수해복구공사	47
• ○○○○지역 보도교설치사업	49
•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1
• ○○○○교 확장공사	53
• ○○소하천 정비공사	55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7
• ○○천 생태하천조성사업	59
• ○○ ○○공원 케이블카파크랜드 조성공사	61
• ○○재해위지구 정비공사	63
• ○○○ ○○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65
•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67
• ○○벽천조성공사	68
•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69



○○·○○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송배수관로 L=23.9km, 가압펌프장 Q=15,000m³/일
- 사업비 : 10,383,0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383,000	9,682,300	700,700	6.75%

◆ 심사 개선내용

- Sheet-Pile 규격을 터파기고, 토압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토 후 조정
U-400x150x13t(60.0kg/m) ⇒ U-400x100x10.5t(48.0kg/m)

요 청	심 사	비 고
		
• U-400x150x13t(60.0kg/m)	• U-400x100x10.5t(48.0kg/m)	



○ PHC 항타 시 적용되는 N치 및 토질별 깊이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용

규 격	적 용 안		비고
	요 청	심 사	
퇴적층	N=2, L=33.1m	N=2, L=34.1m	
모래자갈층	N=24, L=3.0m	N=26, L=3.0m	
풍화암층	N=50, L=3.0m	N=47, L=2.0m	

○ 상부토사높이를 고려하여 관상단 석분부설 높이 변경(300mm → 200mm)

구분	당 초	변 경
석분 부설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공사용 가시설(Sheet Pile)을 구조계산 결과 보다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설치 $Q=1.60\text{m}^3/\text{s}$, 진입도로 $L=168\text{m}$
- 사업비 : 1,874,728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874,728	1,438,571	436,157	23.26%

◆ 심사 개선내용

- 말뚝기초(PHC-PILE) 연암층 지지 $1.35\text{m} \Rightarrow 0.35\text{m}$

요 청	심 사	비 고
말뚝기초 H=12.0m EL(-)17.99m 오래, 자갈 EL(-)10.09m 흙 화 알 EL(-)11.99m 연 암 층	말뚝기초 H=11m EL(-)17.99m 오래, 자갈 EL(-)10.09m 흙 화 알 EL(-)11.99m 연 암 층	
• L = 10~12m • 순성토량 : $52,006\text{m}^3$	• L = 9~11m • 순성토량 : $5,462\text{m}^3$	



- 부지성토 수량 오류 수정 및 평수위 이하는 비다짐, 평수위 이상은 다짐으로 현장에 맞게 수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부지성토 (비다짐)	-	○ 수량 : 358m ³
부지성토 (다 짐)	○ 수량 : 51,434m ³	○ 수량 : 4,531m ³
계	○ 수량 : 51,434m ³	○ 수량 : 4,889m ³
순 성 토	○ 수량 : 52,006m ³	○ 수량 : 5,462m ³

- 호안블럭 설치품을 품셈기준에 맞게 적용

구 분	요 청	심 사
식생호안블럭설치	○ 특별인부(0.03인)	○ 특별인부(0.0162인)
	○ 보통인부(0.06인)	○ 보통인부(0.0324인)
	○ 크 레 인(0.08hr) - 13,842원/ m ²	○ 크 레 인(0.130hr) - 13,129원/ m ² (감: 713원)
	○ 연결고리 자재계산	○ 연결고리 자재계산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배수장 말뚝기초(PHC Pile)을 구조계산 결과 보다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석쌓기 10,931㎡, 콘크리트 포장 448㎡
- 사업비 : 3,058,31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58,310	2,617,360	440,950	14.42%

◆ 심사 개선내용

- 뒷채움 콘크리트 수량 과다산정 : $T=0.4 \Rightarrow T=0.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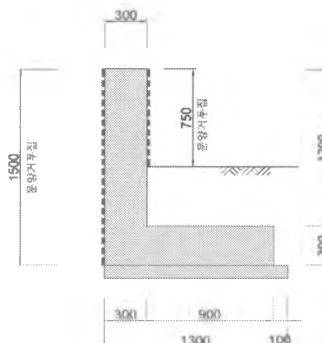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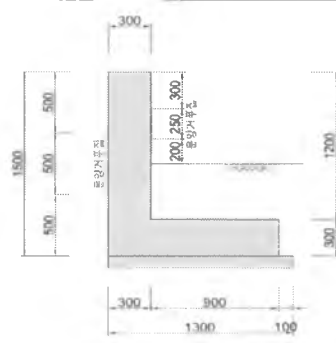
요 청	심 사	비 고
• 콘크리트 = 4,373㎥	• 콘크리트 = 2,186㎥	



○ 무진동암파쇄는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 적용

구 분		요 청	심 사	
무진동암파쇄	공 종	○무진동암파쇄 - 연암 ○무진동암파쇄 = 235m ³	○암석절취 -미진동파쇄Type- I ○미진동굴착Type- I =101m ³	○암석절취 -중규모진동Type-IV ○중규모진동Type-IV =134m ³

○ 문양거푸집 설치는 미관을 고려하여 시야가 확보되는 구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문양 거푸집 설치		
	문양거푸집 = 1,319m ²	문양거푸집 = 456m ²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전석 쌓기 뒤채움 콘크리트 수량을 도면 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역 보도교설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도교 설치 L=90.1m, B=4.0m
- 사업비 : 2,597,48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97,480	2,102,870	494,610	19.04%

◆ 심사 개선내용

- 교량형식에 맞게 교면방수 도막식을 침투식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교면방수	○ 도막방수 A=382.0m ² 16,658원/m ²	○ 침투방수 A=382.0m ² 13,393원/m ²

- 데크시스템(관급자재) 설치단가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데 크 시스템	*.목재가공 및 설치 (데크 및 목교) 보통구조(중)	*.목재가공 및 설치 (데크 및 목교) -보통구조(하)
	*.목재가공및설치(목구조체) (목제난간부) -보통구조	*.목재가공및설치(목구조체) (목제난간부) -간단구조(1층마루틀)
	*.데크제작 및 조립설치 (H형강 및 철판적용) -잡철물제작조립설치(간단)	*.데크제작 및 조립설치 (H형강 및 철판적용) -하부철물설치



○ 아치 리브(Arch rib) 합성정보 ⇒ 일반정보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단면도			
검 토	○ 아치리브(3경간) -구조계산 : 일반정보 -설계내역 : 합성정보 ※ 하중재하비 포함 ○ 상부슬라브(Slab) -상부플랜지 두께 : 20mm -필렛용접두께 : 8mm	○ 아치리브(3경간) -구조계산 : 일반정보 -설계내역 : 일반정보 ※ 하중재하비 제외 ○ 상부슬라브(Slab) -상부플랜지 두께 : 18mm -필렛용접두께 : 7mm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아치 리브(Arch rib)는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체임에도 구조계산과 다르게 합성정보로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PC BOX(3.0×1.5) L=740.0m
- 사업비 : 3,376,0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76,000	2,863,700	512,300	15.17%

◆ 심사 개선내용

- 퇴메우기 램머(80kg) 다짐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물다짐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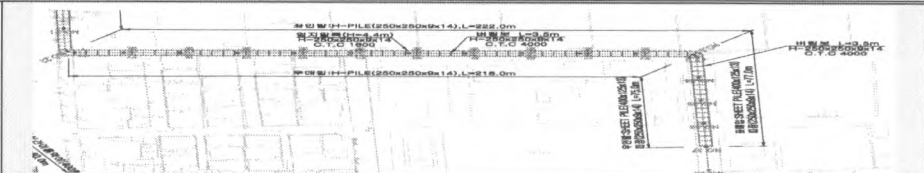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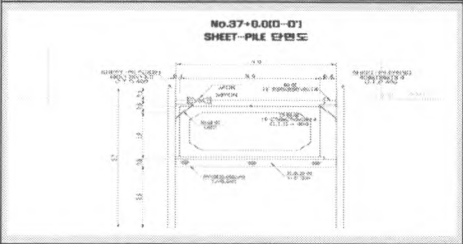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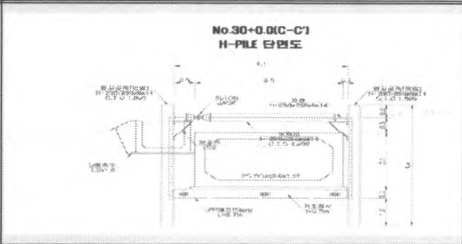
구 분	요 청	심 사
퇴메우기 (산근 2호표)	○퇴메우기(모래다짐)	○물다짐 적용

- 파일천공은 지반조사결과 지반지지력(N치:2~4)을 고려하여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파일천공 (산근 15호표)	○파일천공	○파일천공삭제



- 지하수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강널말뚝(Sheet pile) 매입 ⇒
H-pile+ 토류판 인발

구분		심사내용		
도면				
	당초	변경		
				
구분		요청	심사	비고
가시설 토류벽		○ SHEET 파일 매입 - 근입 깊이 H=2.5m - 연장 L=76m	○ H파일+토류판 인발 - 근입 깊이 H=1.0m - 연장 L=76m	※지반조사결과 지하수위 1.7m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지하터파기용 가시설 토류벽을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교 확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200m
- 사업비 : 2,9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50,000	2,562,000	388,000	13.15%

◆ 심사 개선내용

- 수상·수중 수량산출기준(평균해수면) 높이 조정 1.5m ⇒ 1.4m
- 수중작업 잠수 1조 잠수부 조정 4인 ⇒ 1인

구분	요 청	심 사
교 각 보 강 수 중 작 업 수량조정		
	○ 적용수위 1.5m	○ 적용수위 1.4m



○ 교량배수구 설치수량을 시설기준에 맞추어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도면		
구 분	요 청	심 사
교량배수구	○ 교량배수구 80공(3.0m간격) - L=2.0m	○ 교량배수구 40공(6.0m간격) - L=1.5m

○ 교량보수공사의 콘크리트치핑이 인력작업을 현장에 맞게 장비조합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콘크리트치핑	○ 인력치핑 특별인부0.23인	○ 기계사용치핑 특별인부0.13인, 페이브먼트브레이커0.03hr, 공기압축기 0.015hr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수상·수중 수량산출시 평균해수면 미적용과 잠수조 편성시 잠수부를 과다적용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연석 쌓기 3,961m², 교량 재가설 7개소
- 사업비 : 2,019,765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19,765	1,694,059	325,706	16.12%

◆ 심사 개선내용

- 호안 전석쌓기 근입 깊이 조정 1.0m ⇒ 0.5m
- 철근 현장가공 ⇒ 공장가공

요 청	심 사	비 고
사 면 안 정 해 석 결 과 Soil no. 1 2 γ 1.7 2 ϕ 1 1 c 1 5 δ 1 1 α 1.0 30 Units: Tons, meters and degrees Calculation method: Bishop FS = 1.87 2.85 1.99 2.44 2.0 1.87 5.25 2.25 1.97 9.98 Date: 12-05-04 Time: 오후 11:39:00 Copyright: T&E&S&C		
○ 전석근입깊이 (H=0.5m) 안전율 FS = 1.87 > 1.2 ∴ O.K (우기시)	○ 전석쌓기 근입 깊이 1.0m	
	○ 전석쌓기 근입 깊이 0.5m	



- 전석운반(덤프트럭) 자재대 적재시간(10분 초과) 공제와 토량환산계수 조정(1.45→1.65)

구 분	요 청	심 사
전 석 운 반	○전석운반 - 적재시간 유류대 반영 - f=1.45	○전석운반 - 적재시간 유류대 조정 - f=1.65

- 현장여건에 맞게 보조기충포설 및 다짐 시공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보조기충포설및다짐	○보조기충포설및다짐 - 기계시공(길어깨)	○보조기충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전석쌓기 근입 깊이를 사면안정해석 없이 임의 적용과 철근가공을 비경제적인 현장가공 적용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압송관로 L=3,539m
- 사업비 : 1,070,1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70,100	894,000	176,100	16.46%

◆ 심사 개선내용

- 상수도관 이탈방지압륜 수량 조정 직선구간 ⇒ 곡선구간
- 송학천 관로 관경 조정 D=300mm ⇒ 2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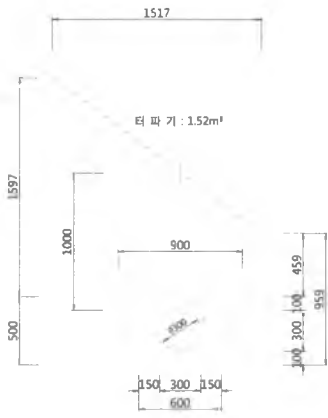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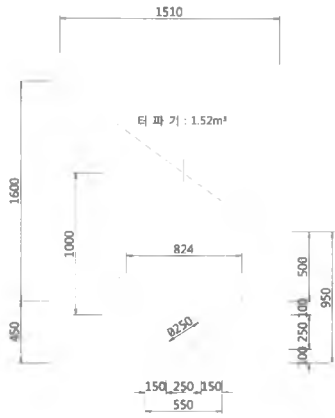
구간	요 청	심 사
이 탈 방 지 압 륜 설 치		
	○ 이탈방지압륜 전구간 적용	○ 이탈방지압륜 곡선구간 적용



○ 터파기 장비는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터파기, 퇴메우기	○ 굴삭기 0.2m³급	○ 굴삭기 0.4m³급

○ 배수용량 재검토를 통한 송학천 배수관경 재산정(D=300→250mm)

구 분	요 청	심 사
관 경	송학천 D300mm	송학천 D250mm
연 장	L=1,768m	L=1,768m
표 준 단면도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관로 부설시 이탈방지압륜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 직선구간 적용과 관경을 과다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천 생태하천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9.57km
- 사업비 : 9,456,40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456,400	8,625,700	830,700	8.70%

◆ 심사 개선내용

- 하천의 미관적인 측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공석은 호안 및 둔치구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가공석 쌓기		
	○ 고수부지 가공석 쌓기 ○ 하상 매립부 가공석 쌓기	○ 고수부지 가공석 놓기 ○ 하상 매립부 전석 쌓기



- 제방 콘크리트 포장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노반정리 후 현
지반위에 포장하는 것으로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콘크리트 포장단면	콘크리트 포장 3,200 터파기 및 되메우기 콘크리트(25-21-8) 보조기층(ø40mm)	콘크리트 포장 3,200 노견토 부설(비다짐) 1:1.5 1:2.0 콘크리트(25-21-8) 보조기층(ø40mm) 노반정리

- 기존보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석부설을 계획하였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석을 전석 찰붙임으로 변경하여 단가를 상향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세굴방 지공	사석부설(60kg 이상) 500	전석(0.3~0.5m) 압석채움(150mm) 콘크리트(25-18-8) PVC PIPE D100, L=0.70m (0.5ea/m²) 500 150 노반정리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하상매립부에 고가(高價)의 가공석 쌓기와 고수부지 가공석 놓기를
쌓기로 적용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 ○○공원 케이블카파크랜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포장 13,582m², 조경 식재 1식
- 사업비 : 6,981,657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981,657	5,634,600	1,347,057	19.20%

◆ 심사 개선내용

- 단지내 발생토 사토처리를 토질분석을 통한 유용성토로 조정
- 수목보호틀 철재기성제품 ⇒ 수목보호틀 초화류식재

구분	요 청	심 사
수목 보호틀 설치		
	○ 수목보호틀 철재기성제품	○ 수목보호틀 초화류식재



- 주차장 재료분리석은 현지여건에 맞게 규격을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재료 분리석 설치	재료분리경계석(화강석) 150x150x1000	재료분리경계석(화강석) 100x100x1000

-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형식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역T형 → L형 옹벽으로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옹벽 설치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단지내 발생토 사토처리와 수목보호를 철재기성제품으로 გადა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재해위지구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 L=80.0m, B=24.0~30.0m
- 사 업 비 : 14,710,57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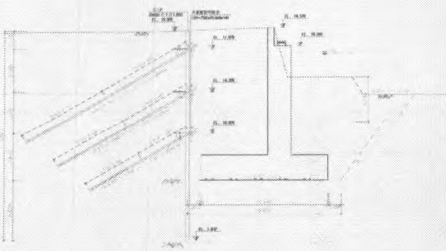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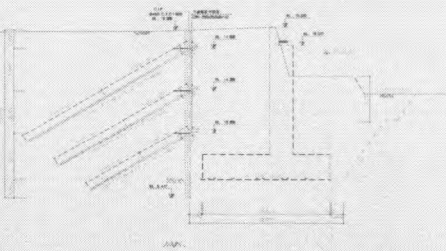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710,570	13,559,600	1,150,970	7.80%

◆ 심사 개선내용

- 강교제작 필렛용접 두께 8mm ⇒ 7mm
- 가시설(CIP) 근입 깊이 2.7~5.0m ⇒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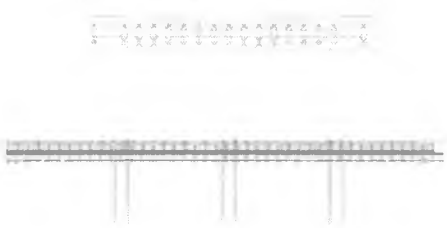
요 청	심 사	비 고
		
○ 안전율(Fs):(A1)4.80~(A2)5.57>1.20	○ 안전율(Fs):(A1)3.24~(A2)2.95>1.20	



- 강교제작공종에서 필렛용접 두께(8mm→7mm)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맞도록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강교제작 (산근 9호표)	○ 강교제작(8mm) (용접길이:69,555m)	○ 강교제작(7mm) (용접길이:53,143m)

- 하천세굴방지공종에서 세굴심도에 맞게(2단→1단) 하상보호블럭 깊이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도면		
검토	○ 세굴심도 H=3.94m(직경:0.93m) ○ 교각부와 하상구간 동일 적용	○ 세굴심도 H=3.30m(직경:0.42m) ○ 교각부와 하상구간을 세굴심도에 맞게 구분하여 적용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강교제작 필렛용접 두께와 가시설(CIP) 근입 깊이를 과다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 ○○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와인터널 564m, 레일바이크 3km, 주차장 5,700m²
- 사업비 : 8,914,570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914,570	7,650,100	1,264,470	14.10%

◆ 심사 개선내용

- 낙동철교가 인도교로 관리 전환됨에 따른 보수공 단계별 시공으로 전환
- 기초터파기 계획고 조정에 따른 가시설(Sheet Pile) 제외

요 청	심 사	비 고
○ 기초터파기 계획고 : 2.0m	○ 기초터파기 계획고 : 3.5m	



○ 공사 상류부는 오탉방지막이 불필요하므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오탉방지막	○ 661m(33SP)	○ 578m(29SP)

○ 화강석판석붙임 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화강석판석붙임 (T30,잔다듬,바닥)	- 석 공 : 0.49 - 보통인부 : 0.25 - 바탕고르기및비빔	- 석 공 : 0.4 - 보통인부 : 0.2 - 바탕고르기및비빔삭제

○ 대리석붙임 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대리석붙임 (T20,바닥)	- 석 공 : 0.49 - 보통인부 : 0.25 - 바탕고르기및비빔	- 석 공 : 0.29 - 보통인부 : 0.14 - 바탕고르기및비빔삭제

◆ 원가분석 시 착안사항

- 낙동철교의 인도교로 관리전환과 가시설(Sheet Pile)을 과다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700m³/일
- 사업비 : 6,057,5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57,500	5,640,600	416,900	6.9%

◆ 주요 심사내용

- UCM 공법 천공수량 조정 : 352공 → 330공
 - 도면상 천공수량 오기에 따른 조정 : 3,120m → 2,991m
- 비계물량 조정
 - 당초) 옹벽 기초부 ~ 옹벽 상단 0.0m
 - 변경) 옹벽 기초부 ~ 옹벽 상단 - 0.5m
- 철근가공조립 195톤 → 공장가공조립 195톤
 - 총인처리시설 철근배근에 따른 소재지내 철근가공공장 이용
- 사토 처리시 굴삭기 비용제외
 - 굴삭기 터파기시 동시 적재에 따른 사토처리내 굴삭기비용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도면상 수량확인 및 현장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공정 및 품셈 구성



○○벽천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벽천조성 1,115m²
- 사 업 비 : 839,95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39,950	810,797	29,153	3.5%

◆ 주요 심사내용

- 벽화조성 단가(견적가) 조정 : 14,400천원 ⇒ 10,950천원
 - 나라장터內 유사물품에 시공비(품셈적용)를 계상하여 산정
- 징검돌 할증적용 제외 : 1.1EA ⇒ 1.0EA
 - 완성자재 구입에 따른 물품할증 제외
- 사토운반 거리조정
 - 섬지역 중점부분을 적용하여 거리조정 : 5km → 0.3km
- 화강석 놓기 품 조정 (34톤 → 74m)
 - 간단하고 정형화된 돌놓기 품을 중량 대비 m당 품으로 환산 적용하여 단가절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확인에 따른 품셈조정 및 시장가격을 고려한 자재단가 및 시공 가격 결정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육시설조성 22,871m²
- 사업비 : 2,153,6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153,600	1,964,712	188,888	8.8%

◆ 주요 심사내용

- 메쉬 방풍막 자재단가 조정 : 32,000원/m² ⇒ 10,000원/m²
 - 견적자재에 대한 시중가격조사에 따른 감액
- 법면 보호공 설치에 따른 품셈내 불필요 자재 제외
 - 실제 도로성토부 거적덮기시 사용되지 않는 고정핀, 매트고정판 등 품셈내 포함 자료 제외
- 보조기층 운반단가 분리조정
 - 현장내 최소거리 석산확인 및 견적서(자재+운반비용) 단가에 대한 운반비용 분리계상으로 단가절감
 - 당초 36,500원/m³ ⇒ 변경 11,650원/m³ (자재 8,000원 + 운반경비 3,65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내 실제 시공과정 및 지역자재 파악에 따른 단가 결정



○○소하천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호안정비 931m
- 사업비 : 952,73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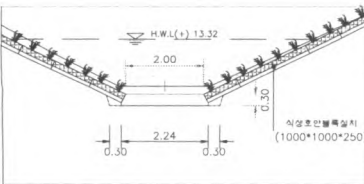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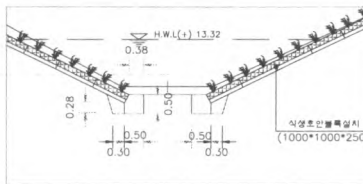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52,735	907,378	45,357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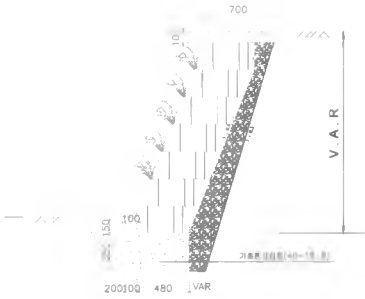
◆ 주요 심사내용

- 생태호안블럭설치 단가 재조정 ($14,000\text{원}/\text{m}^2 \rightarrow 11,000\text{원}/\text{m}^2$)
 - 일반 호안블럭과 유사규격에 따른 일반블럭설치품 적용
- 하상바닥부 Con'c 라이닝 물량 제외
 - 당초 배수로 하단부는 Con'c 라이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유속지장이 없고 자연친화적인 배수로 구성을 위하여 물량제외 처리

요 청	심 사	비 고
		
레 미 콘 : 204.6m ³ 거 푸 집 : 171.7m ² 철근(D13): 5.093Ton	레 미 콘 : 130.7m ³ 거 푸 집 : 551.8m ² 철근(D13): - Ton	



○ 견치블럭 하단부 자재높이 조정에 따른 절감

요 청	심 사	비 고
		
H=0.75m A=725.1m²	H=0.50m A=490.3m²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연 친화적 시공방법과 자재물량 감소에 따른 시공단가 감액



○○지구 체육시설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운동장 조성 1식
- 사업비 : 65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50,000	559,445	90,555	13.9%

◆ 주요 심사내용

- 잡석구입 운반시 적재장비규격 변경에 따른 감액
 - 실제 석산내 운용장비(로더 1.72m³→2.87m³)로 변경
- 잡석 운반거리 산정시 최단거리 확보에 따른 감액
 - 당초 41km → 변경 32km ∴ 9km 절감
- 강관 유공배관 조립단가 변경
 - 당초 배관조립품은 납품회사 자체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나 품셈내 유사 단가인 강판보강 PCF 단가로 변경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잡석 및 마사토는 구입처 및 운반거리(현장도착도, 상차도)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변 구입처에 대한 개별 조사 후 최저단가 선정



○○재해위험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C-거더교 L=28m B=7.0m
- 사업비 : 580,734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80,734	532,840	47,894	8.2%

◆ 주요 심사내용

- 교량받침 자재(고정단, 양방향, 일방향) 단가조정
 - 가격정보 자재적용에 따른 절감 (220만원/개당→160만원/개당)
- C-거더 제작 강연선 설치품내 할증율 제외
 - 물량내 할증품 및 일위대가 내 할증품 등 이중적용부분 제외
- 이중 계상된 강연선 조립설치 품 제외
 - 쉬즈조립품내에 강연선 조립품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품 제외
- C-거더 강재거푸집 제작설치품 당초 70% 조정
 - 설계상 강재거푸집은 교각, 코핑작업시 적용되는 품으로서 육상에서 제작설치되는 본 공종에는 작업난이도를 고려하여 실제품의 70%를 적용함

◆ 기타 착안사항 등

- 거더교는 일반 콘크리트교량과 시공방법 및 적용품셈이 다르므로 현장 여건 확인 후 적정단가를 적용



○○지구 하도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도정비 1식
- 사업비 : 1,563,03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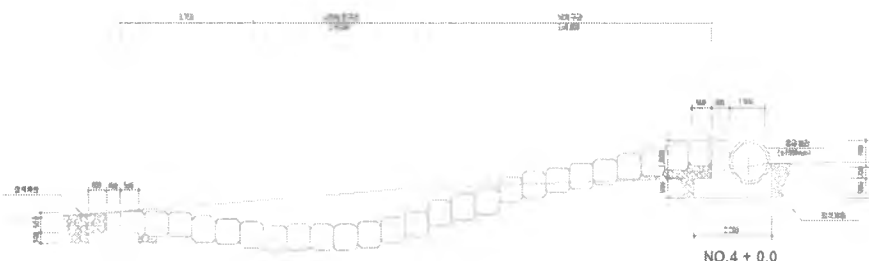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63,030	1,496,320	66,710	4.3%

◆ 주요 심사내용

- 전석깔기 물량과다에 따른 조정 (블라이 공식 적용)

	
요 청	심 사
○ 전석깔기 : 1,064m' - 낙차구간 L=8.0m - 수면형성구간 L=5.0m + 3.75m = 8.75m	○ 전석깔기 : 534m' - 물받이 L1=5.4m - 바닥보호공 L2=3.0m * 계산식(물받이) - $L1 = 0.6C\sqrt{H}$ C=9, H=1.0 * 계산식(바닥보호공)_{1/2} - $L2 = 0.66C \cdot f \cdot (H \cdot q) - L1$ f=1, H=1.0 $q = h \cdot V$ (h=1.0, V=2.0m/sec)



○ 지수벽 레미콘 수량 조정

요 청	심 사
○ 지수벽 레미콘타설 : 163m³ - 유공홀관 매입에 따른 공제 미반영	○ 지수벽 레미콘타설 : 150m³ - 유공홀관 매입에 따른 레미콘 물량 공제

○ 용벽블럭 하단부 조정에 따른 자재절감

요 청	심 사	비 고
H=0.75m A=915m²	H=0.60m A=876m²	감 H=0.15M 감 A=39m²

◆ 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내 과다계상된 자재의 수량 재적용에 따른 절감



○○하수관거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로(D300~D500) L=7.5km
- 사업비 : 3,170,611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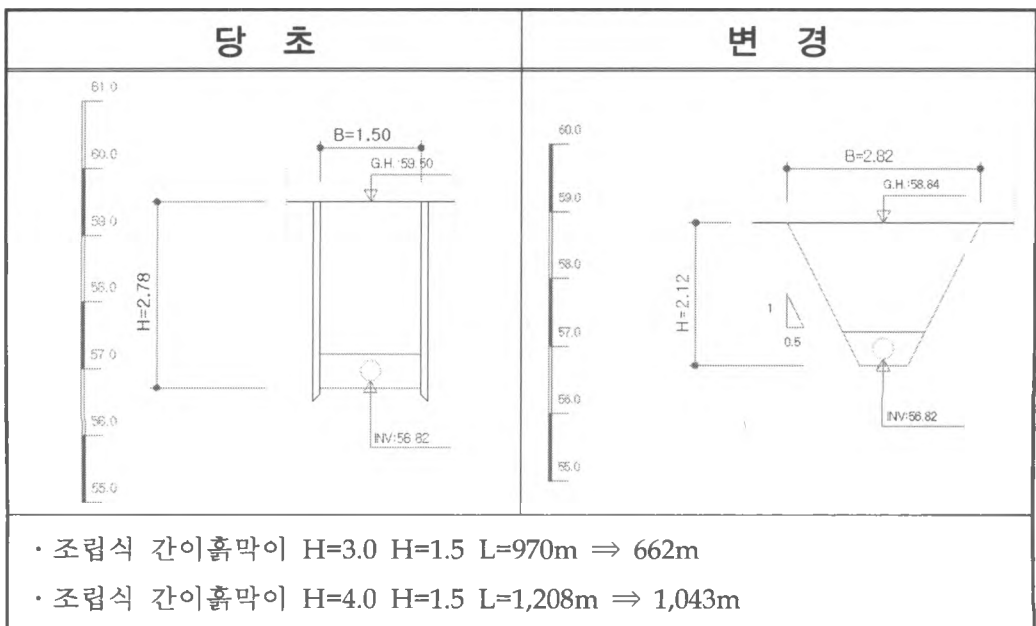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70,611	2,716,859	453,752	14.3%

◆ 주요 심사내용

- 조립식 간이흡막이 ⇒ OPEN CUT으로 물량 조정





- 하천호안공 면고르기 물량조정 실시 ($11,600\text{m}^3 \rightarrow 1,044\text{m}^3$)
 - 하상 돌망태 시공에 따른 일위대가상 토공량 중복부분 제외
- 하상내 가물막이 연장조정 ($L=1,862\text{m} \rightarrow 1,303\text{m}$)
 - 하천내 지형, 물의 흐름, 공사시기를 고려하여 70%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본 현장은 타 공사현장인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토공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성토부 중복구간에 대하여 작업공간, 시공시기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흙막이물량 대신 오픈 컷으로 조정 실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육공원조성 1식, 도로개설 L=610m, B=8.0m
- 사업비 : 4,624,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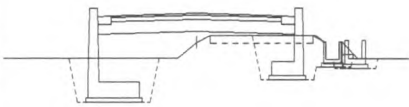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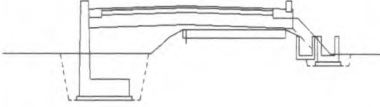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624,000	4,201,863	422,137	9.1%

◆ 주요 심사내용

- 도로부 L옹벽 불필요 및 გადა설계구간에 대한 조정

요 청	심 사	비 고
		
○ H=1.5~4.0m L=1,021m	○ H=1.5~4.0m L=717m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확인결과 도로 성토시 주변여건상 L형 옹벽이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물량조정 실시



〇〇~〇〇 연결도로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595m B=8.0m
- 사업비 : 909,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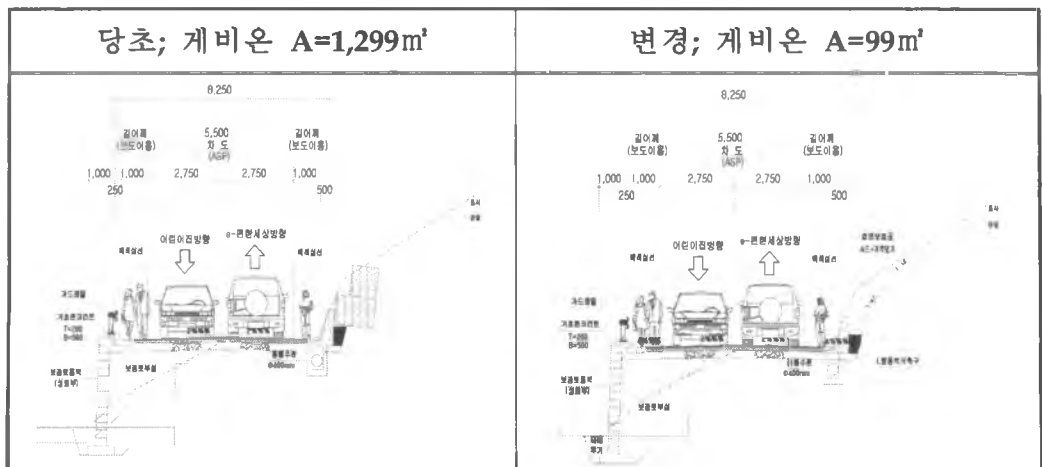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09,000	707,700	201,300	22.1%

◆ 주요 심사내용

- 산지면 암파쇄 구간 계비온 물량 제외처리(1,299m²)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존 경작지 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지측 절토면(암구간)파쇄 최소화로 계비온 설치물량 절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호안축제 L=1.4km, 교량 3개소
- 사업비 : 5,329,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329,000	4,931,046	397,954	7.5%

◆ 주요 심사내용

- 토공 덤프운반(순성토, 사토) 적재운반 시간 조정
 - 당초 t1 (10mim 초과) → 변경 (Cm-t1)/Cm 적용
- 교량기초 강관파일 항타 공중 삭제
 - 오거에 의한 강관천공삽입과 강관항타 중복설정에 따른 제외
- 교량 PR 거더제작 파다공중부분에 대한 조정
 - PR리브 (소형부재→대형부재) 조정에 따른 절감
 - ∴ 당초> 大 132톤, 小 59톤, 변경> 大 142톤, 小 49톤
- PR 거더제작 작업 증감율 조정
 - 총중량 증감율 15%→3.5%, 동일거더 연속형식 - → -4%

◆ 기타 착안사항 등

- PR 거더교량은 신공법 교량으로서 거더 제작과정에 따른 부재의 용도 (리브 등)를 확인하여 대소형 부재로 구분적용 하였음



○○○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관 1동(지상 2층, 연면적 3,794.72㎡)
- 사 업 비 : 8,148,58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148,584	7,763,779	384,805	4.72%

◆ 주요 심사내용

- 기와잇기, 모로단청, 석재가공 등의 품을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인부임을 변경
- 화물용 승강기 및 p-1부스터펌프를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
- 보도철기 품을 재활공이 아닌 단순철기로 변경(설치비의 50%→15%)
- U형 측구설치 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 단가조정
 - 합판거푸집 → 유로폼, 철근가공조립(보통→간단)
- 구조물터파기 리핑암, 연암 및 무근콘크리트 깨기의 작업능률(Q) 조정
- 사토처리 수량 오류 조정
 - 토사 사토처리→16,522㎡, 연암 사토처리 996㎡→20㎡
- 포장골재 자재수량 다짐할증 누락 조정
 - 보조기층(T=40mm) : 103㎡→131㎡, 동상방지층(T=75mm) : 64㎡→75㎡

◆ 기타 착안사항 등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및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 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육연구시설 2동(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99.60㎡)
- 사업비 : 4,16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160,000	4,074,296	85,704	2.06%

◆ 주요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타설 위치가 비노출면임을 감안하여 합판거푸집 사용 회수 조정(1회 → 3회, 3회 → 5회)
- 콘크리트파일 본수가 도면과 내역이 불일치하여 현황도면에 맞게 추가
- 창호주변의 수밀코킹은 실사용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물량제외
- 경비 중 산재보험료를 재 산정(3.6%→3.7%)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에 빠진 인력품을 전기품 셈에 의거 재 산정
- 조달청, 가격정보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한 단가 조정(55품목)

◆ 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도 및 내역서의 면밀한 검토로 적정 물량 산출



○○○ 관리자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리자 1동(지상 4층, 연면적 535.56㎡)
- 사업비 : 976,438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76,438	949,454	26,984	2.76%

◆ 주요 심사내용

- 경량철골천정틀 설치비에 마감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어 AL물당설치 노무비 삭제
- 수성페인트 로울러칠을 뿔칠로 변경
- 1층 탁구장과 화장실 사이의 벽체를 시공,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드라이월(150mm)에서 시멘트벽돌(1.0B) 쌓기로 변경
- 창틀주위 수밀코킹은 창틀주변을 모르타르로 충전토록 되어있고 미장 스톤 등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여 물량 제외
- 급수·급탕배관설치, 오·배수 통기배관설치, 환기덕트설치, 가스배관 설치 공사의 물량산출서 및 일위대가 산정시 할증률 중복적용되어 재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숲속의 집 건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숙박시설 5동(지상 2층, 연면적 269.70m²)
- 사업비 : 752,45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52,452	735,646	16,806	2.23%

◆ 주요 심사내용

- 강관비계매기를 물량을 비계매기 높이를 처마에서 1m 추가하여 재산정
- 이동식강관말비계를 100m²당 1대로 재산정
- 시멘트액체방수와 보호모르타르바름 물량은 1층 바닥에 방습 필름이 시공
토록 되어 있고, 2층은 방수가 불필요하여 제외
- 계단논슬립 PVC 중보행용 대가 적용시 설치 인력품을 콘크리트 계단에
서 목조계단으로 변경 적용
- 창틀주변 수밀코킹은 모르타르로 충전토록 되어있어 불필요하여 제외
- 급수펌프 설치 노무비 제외
 - 급수펌프는 현장설치도로서 별도의 설치노무비 불필요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연구동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구동 1동(지상 1층, 연면적 1,151.33㎡)
- 사업비 : 1,486,45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86,453	1,391,466	94,986	6.39%

◆ 주요 심사내용

- 전체부지가 성토중에 있어 부지내에서 잔토처리가 가능하여 잔토처리 물량 삭제
- 철골(H빔)의 방청 및 조합페인트칠을 붓칠에서 뿔칠로 변경
- 내·외벽의 수성페인트 로울러칠를 뿔칠로 변경
- 잔디식재를 평떼에서 줄떼로 변경
- 창틀주변 수밀코킹은 모르타르로 충전토록 되어있어 불필요하여 제외
- 핸드드라이기는 핸드타월이 있어 불필요하여 물량 제외
- 중앙컨트롤롤러 세트 등 5개 공정은 규모가 소규모로 중앙제어 장치가 불필요하여 물량 제외
- 냉방기, 초음파 가습기, 환경제어시스템 등 14개 품목은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청와대의 2개동(연면적 1033.6㎡)
- 사업비 : 7,869,802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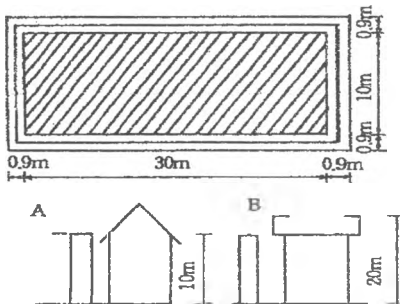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869,802	7,424,126	445,676	5.7%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기타경비 효율 조정
 - 기타경비 : 6.9% → 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오류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외부쌍줄비계 수량산출오류 조정
 - 수량산출시 적용된 건물높이(H) : H=16.75m → H=10.4m



< 외벽쌍줄비계 수량산출 방법 >

길이산출 $(30+0.9 \times 2+10+0.9 \times 2) \times 2 = 87.2\text{m}$

높이산출 A일 경우 10m(처마높이까지)

B일 경우 12m(파라펫의 상단까지)

쌍줄비계 면적

A일 경우 $87.2 \times 10 = 872\text{㎡}$

B일 경우 $87.2 \times 12 = 1046.4\text{㎡}$



- 외벽 몰탈마감부분 콘크리트 면마무리 제외
- 건축공사 중 전시시설공사와 중복부분인 경량철골천정틀, 단열재 불임 제외
- 한식유약기와, 알루미늄창호, 화장실 칸막이 관급자재로 전환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므로 관급자재로 전환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타 공사와 중복공정 및 불필요 공정 반영 여부
-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직접구매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관급전환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체험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수숙박동 1동(건축연면적 3620.47㎡)
- 사업비 : 1,984,866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84,866	1,749,979	234,887	11.8%

◆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 적용 개월수 공사기간에 맞추어 조정
 - 강관비계매기, 강관틀비계매기, 강관비계다리 등 : 6개월 → 3개월
- 건축물 현장정리 건축물구조에 맞게 조정
 - 철근콘크리트조 → 목조로 조정
- 토 및 지정공사의 잔토 처리물량 및 운반거리 조정
 - 잔토발생량 현장 내 순성토에 유용 가능하여 잔토처리를 현장 내 토사운반으로 조정
- 열경화성 수지 천정재 붙임 단가 조정
 - 자재단가가 현장설치도이므로 자재할증 및 인력품 제외
- 그을림 한식기와 관급자재로 전환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므로 관급자재로 전환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재래시장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래시장 정비공사 1식(막구조 1동, 장터부스 24개)
- 사업비 : 3,079,3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79,300	2,804,700	274,600	8.9%

◆ 주요 심사내용

- 막구조 철구조물 제작설치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 철골가공조립 및 세우기와 경량형강철골조 조립 설치로 조정
- 막구조물 설치부분 철골공사에 대한 강설 누락분 반영
- 철근, 모래, 시멘트 운반비 조정 : 현장도착도이므로 운반비 제외
- 기성제품인 조립식화장실 관급자재로 전환
- 관급자재로 계상된 소형고압블럭 자재비 중복부분 조정
- 데크포장 하지철물 설치공사 잡철물 제작설치를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설치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조달단가, 물가정보, 실거래가격 등에 원가 산출 내용 및 자재단가 정확히 파악 반영



○○○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리모델링공사 1식(외벽마감 및 내부수장공사)
- 사업비 : 504,469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04,469	372,476	131,993	26.1%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기타경비 요율 조정
 - 기타경비 : 6.0% → 5.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오류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알루미늄패널, 경량칸막이, 화장실칸막이, 천정수장재 설치품 및 재료비 할증 조정
 - 자재단가가 현장설치도이므로 할증 및 설치품 제외
- 통기성 도막방수공사 바탕만들기 작업여건에 맞추어 조정
 - 바탕고르기 201.6㎡ → 바탕처리 201.6㎡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영지 관아복원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아복원공사 1식(산성청 등 10개동, 건축연면적 654.97㎡)
- 사업비 : 3,728,42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28,475	3,552,562	175,913	4.7%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미적용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오류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연치목, 자연석 굴뚝 쌓기, 한식벽지 바름, 당골 회벽 바르기, 담장기와 잇기 등 2012년 개정 문화재품 적용
- 강관비계매기 및 가설덧집 수량산출 오류 조정
- 토목 파형강관 설치 배관공(수도)을 배관공으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문화재 품셈, 조달단가, 물가정보, 실거래가격 등에 의한 원가 산출내용 및 자재단가 정확히 파악 반영

3. 전기공사

• ○○○주제관 신축 전기공사	97
• ○○○연구동 전기공사	98
• ○○○지구 전기공사	99
• ○○산업단지 진입도로 전기공사	100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기공사	102
• ○○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104
• ○○ 하수관거 정비사업	106





○○○주제관 신축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794.72㎡(지상2층/1동)
 - 수변전 · 전력간선 · 동력 · 전등 · 전열 · 냉난방전원 설비공사 각 1식
- 사업비 : 940,581 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40,581	848,892	91,689	9.75%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피뢰침 지지대 외 9종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도급자재로 설계된 배전반 및 조명기구를 관급자재로 변경
 - 배전반(313,863→230,078천원), 조명기구(50,647→49,127천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관급자재로 반영
-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및 제어용케이블 설치 노무비조정(전기품 5-11)
 - 직매시 저압케이블전공 : 100 → 80%
- 조명기구 설치 노무비 조정(전기품5-25)
 -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공사 : 내선전공 100 → 90%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연구동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500KVA), 조명설비 1식
- 사업비 : 337,451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7,451	316,886	20,565	6.09%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강제전선과 외 52종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동일제품(배전반)이 조달청 3자단가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높은 견적가를 적용설계되어 관급자재 단가 조정
 - 배전반(500KVA) : 62,267→56,129천원
 - ※ 조달법에 의거 동등 규격이상의 자재가 조달청 3자단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로 선정 추진
- 전기재료의 할증률 적용기준에 따라 조정 (전기품1-6)
 - 경질비닐전선관, 접지용비닐절연전선관 할증률 : 10→5%
- 조명기구 설치 노무비 조정(전기품5-25)
 -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공사 : 내선전공 100→90%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지구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공사 178본, 신호등공사 7개소
- 사업비 : 1,156,48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56,480	1,116,139	40,341	3.49%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가로등주 외 10종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누락된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계상
 - 조달수수료 요율(3자단가) : 0→0.54%
- 공기가 짧은 공사임에도 도급자 사무실을 가설건축물로 설계되어 컨테이너로 변경 적용
 - 도급자 사무실·창고(4,489천원)→컨테이너 2동(1,320천원)
 - 컨테이너 8개월 사용에 따른 손율 19%적용(건축품 2-2)
- 관급자재 적기 구입 제공에 따른 관급자재 관리비(1,911천원) 제외
-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일치되지 않는 자재규격 조정
 - 교통신호등주 기초양카 : Ø200×2.0m→Ø200×1.5m
 - 교통신호등주 기초양카 : Ø250×2.0m→Ø200×1.8m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산업단지 진입도로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통로박스 조명, 신호등 공사 각 1식
- 사업비 : 773,22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73,227	718,604	54,623	7.06%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가로등주 외 19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일위대가(공량 산출근거) 및 내역서 조정

품 명	규 격	품셈 변경	공종변경		비 고
			당 초	조 정	
폴리에틸렌전선관 (대가 1~7호)	PE 28, 36, 42, 54, 70, 82, 100mm	품5-1 → 품4-31	내선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전품 4-31 합성수지 파형관설치
강제전선관 (대가 8,9호)	아연도 28, 42mm	품5-1 → 품4-29	내선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전품 4-29 강관설치
PULL BOX (대가30호)	150*150*150	내선전공	0.66	0.2	300mm 이하는 아웃렛 박스 적용 전품 5-3

- 내역서 조정 : 전선관 할증율 조정(대가1호~7호, 5% → 3%)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조달청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2. 3. 6.)」의
규정 에 맞게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의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자재단가 및 사양의 적정 여부
- 노무비 산정 시 적정품셈 적용 여부
- 타 공사와의 중복계산 여부
- 전선 및 케이블 적정 할증율 적용 여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공사 1식(98톤/일)
- 사 업 비 : 2,370,1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70,100	2,223,155	146,945	6.19%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수,배전반 외 7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일위대가(공량 산출근거) 및 내역서 조정

품 명	규 격	공 종 (내용)	수 량		비 고
			당 초	조 정	
강제 전선관	아연도 54 C	내선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0.19 0 0	0 0.031 0.062	전품 5-1 → 전품 4-29 변경 적용
강제 전선관	아연도 70 C	내선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0.28 0 0	0 0.036 0.072	전품 5-1 → 전품 4-29 변경 적용
강제 전선관	아연도 82 C	내선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0.37 0 0	0 0.042 0.084	전품 5-1 → 전품 4-29 변경 적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조달청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2. 3. 6.)」의
규정 에 맞게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용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자재단가 및 사양의 적정 여부
- 노무비 산정 시 적정품셈 적용 여부
- 타 공사와의 중복계산 여부



○○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맨홀 펌프장(17개소) 전기,동력,계측제어 공사
- 사업비 : 330,6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0,630	307,408	23,222	7.02%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계측제어 장치(TMTC) 외 2종 견적 및 가격조사 적용
- 일위대가(공량 산출근거)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품명(공종)	단위 (규격)	수량(내역)		비 고
			당 초	조 정	
일위대가 (1호표)	관로굴착	깊이(mm) 조정	1,350	750	경제적, 합리적 시공
일위대가 (9호표)	터파기	백호+인력	80+20	90+10	"
일위대가 (11호표)	되메우고 다지기	백호+인력	80+20	90+10	"
일위대가 (13호표)	굴삭기 (건설기계 조장)	인	요청	삭제	품셈 개정으로 삭제
일위대가 (5,7호표)	합판 거푸집	회수	4	6	경제적, 합리적 시공
내역서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이내	3%	0%	전품 I 편 1-22 (일위대가와 중복계상)
공량산출근거	폴박스 설치	내선전공	0.35	0.17	전품 5-4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자재단가 및 사양의 적정 여부
- 노무비 산정 시 적정품셈 적용 여부
- 타 공사와의 중복계산 여부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우수처리시설 5개소 전기, 계측제어 각 1식
- 사업비 : 984,9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84,920	928,961	55,959	5.68%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초기 우수제어 현장설비 외 4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일위대가(공량 산출근거) 및 내역서 조정

호표	품명	규격	공종	수량		비고
				당초	조정	
1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mm	보통인부 배전전공	0.026 0.011	0.018 0.007	전품 4-31
2		50mm	보통인부 배전전공	0.026 0.011	0.018 0.007	
4	0.6/1kV 제어용 난연(F-CVV)	3C 1.5mm ²	저압 케이블공	0.038	0.019	전품 5-13
43	단위시험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H/W시험사 S/W시험사	2 2 2 2	0 0 0 0	제44호표 통합 시운전으로 대체
45	현장제어반 시운전 (통신포함)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H/W시험사 S/W시험사	2 2 2 2	0 0 0 0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용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여부
- 자재단가 및 사양의 적정 여부
- 노무비 산정 시 적정품셈 적용 여부
- 타 공사와의 중복계산 여부

4. 기계·통신·소방공사

- ○○시설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강공사 111
- ○○군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112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13
- ○○지구 배수개선 사업 115
- ○○유입펌프장 시설 개선공사 116
- ○○군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 117
- ○○ 생태마을 조성사업 기계설비 공사 118
- ○○시 어린이보호 CCTV 설치공사 119
- ○○○주제관 신축 소방공사 121





○○시설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 사업비 : 691,384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91,384	654,725	36,659	5.3%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H형강 외 11종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공사재료의 할증률 적용기준에 따라 조정 (기계품1-9)
 - 형강(H·L·C), 평철, 파이프 할증률 : 10→5%
- 조명기구 설치 노무비 조정(전기품5-25)
 -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공사 : 내선전공 100→90%
- 자재 단위중량 조정
 - H형강(150×150×7/10) 단위중량 : 72.4 →31.5kg/m
- 중복 계상된 자재 수량조정

품명	규격	공종	단위	당초	조정	비고
재처리장치	SS400-12t	바닥판	개	1	0	
	SS400-16t	바닥판	개	2	0	
반전식반응탑	SS400-9t	BODY	개	1	0	
VENTURI & REACTOR	SS400-6t	벤츄리	개	2	0	
	SS400-6t	반응기	개	3	2	

◆ 기타 착안사항 등

- 도면과 설계내역서 검토하여 중복 계상된 자재 감조정



○○군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분뇨처리시설(기계, 토목, 건축) 개량공사 1식
- 사업비 : 2,455,70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55,700	2,243,829	211,871	8.62%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탈수기 외 82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 공법사 선정사업은 기사재 재 견적후 가격조정
- 배관 설치시 직중 변경 (품셈 1-1-1 플랜트배관 [주]13)
 - 플랜트 용접공, 플랜트 배관공 → 용접공, 배관공
- 내역서 잡재료비 적용율 조정 (품셈 1-12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주재료비의 2%
- 제경비 착오 적용분 조정 (2012년 조달청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구 분	요 청	심 사
이 윤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0%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폐수종말 처리시설(Q=6,500m³/일) 증설사업 1식
- 사업비 : 3,140,715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40,715	2,959,000	181,715	5.78%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교반기 외 29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 공법사 선정사업은 기자재 재 견적 후 가격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 재료 물량조정 (품셈 1-9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 아세틸렌 (1,000kg → 2.8kg)
- 내역서 조정

구 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 고(적용)
기계	응집반응조 증설 -잡철물 제작설치 3차 침전조 웨어보강 -잡철물 제작설치	등급	보 통 복 잡	간 단 보 통	- 과다계상 - 과다계상
기계	관 지지대 - 주재료비의	%	20	0	- 근거 없음
	잡 재료비 - 주재료비의	%	5	2	- 과다계상
(총괄) 시운전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환경) -초급기술자(전기) -초급기술자(기계) -FF 처리수(BOD) -FF 처리수(COD) -FF 처리수(SS) -FF 처리수(T-N) -FF 처리수(T-P)	M/D " " SA " " " " "	16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 90 90 90 90 90 90 90	- 과다계상



- 제경비 착오 적용분 조정 (2012년 조달청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노무비 외 3개 항목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지구 배수개선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펌프 시설(펌프, 스크린 등) 설치 등 1식
- 사업비 : 798,11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98,110	747,529	50,581	6.33%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수중사류펌프 외 8종 견적 및 조사가격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 고 (적용)
일위대가 51호표	펌프설치 - 설치품 적용 변경	식	원심펌프 설치	수중펌프 설치	- 기품 Ⅲ편 2-12-2 →기품 Ⅱ편 1-6-1
일위대가 55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난이도 조정	식	보 통	간 단	- 기품 Ⅱ편 1-9
내역서	역지변 접형변 설치	개소	8	2	수량과다 산정
내역서	관급자재 - 조달수수료	%	1.07	0.54	·할증요율 착오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유입펌프장 시설 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펌프 시설(펌프, 스크린, 탈취기 등) 설치 등 1식
- 사업비 : 1,441,20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41,200	1,368,650	72,550	5.03%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수중오수펌프 외 11종 견적 및 조사가격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공 종	단 위	요 청	심 사	비 고 (적용)
3, 4호표	직종 변경	식	프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	용접공, 배관공	- 기품 Ⅲ편 1-1-1 주해) 13번
7,8,11,12,26 호표	직종 변경	식	플랜트배관공	배관공	"
3-1 유입펌프장설비 3-2 탈취설비	잡자재비율 조정 - 주재료비의 5% 이내	%	5	2	- 기품 I 편 1-12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용여부 검토



○○군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태양열 설비(집열면적 704㎡) 설치공사 1식
- 사업비 : 673,00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73,000	642,799	30,201	4.48%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집열기 외 67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품 명	규 격	공 종	수량(내역)		비 고
			당 초	조 정	
일반기기설치 (1-2호표)	ton 당	기계설치공	100%	0%	크레인 설치와 중복 됨으로 삭감
		특별인부	100%	0%	
옥내배관보온 (3-1 ~ 3-9호표)	100A×25T 외	보온공 외	100%	75%	발포폴리에틸렌 시공시 25% 삭감
HI-PVC 전선관 (5-5호표)	16Ø,	내선전공	100%	80%	CD관은 합성수지전선관의 80%

- 제경비 착오 적용분 조정 (2012년 조달청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노무비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용여부 검토



○○ 생태마을 조성사업 기계설비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계설비(냉난방, 배관, 위생도기 등) 설치공사 1식
- 사업비 : 98,732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8,732	96,207	2,524	2.56%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옥상수조 외 3종 견적 및 가격 조사분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 고(적용)
(기계)	공구손료(인건비의)	%	3	0	- 일위대가와 중복 계상 기계품셈 1-1-12 참조
	에어컨 물량(드레인, 냉매관, 전선 및 전선관) 과다 산정분 조정	m	110%	100%	- 과다 산정
	전열파이프 보일러 설치 노임 조정	인	115%	100%	- 과다 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용여부 검토



〇〇시 어린이보호 CCTV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CCTV 설치공사(46개소 306대, 관제센터) 1식
- 사 업 비 : 2,765,26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765,260	2,625,350	139,910	5.05%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카메라 외 56종 견적 및 가격조사분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품명(공종)	단위 (규격)	수량(내역)		비 고
			당 초	조 정	
노무비 산출 근거 돔카메라 설치 (제 1호표)	통신관련 산업기사	인	0.74	0.67	(정통품 5-3-2)
	통신설비공	인	0.73	0.66	
노무비 산출 근거 서버설치 (제 5호표)	통신설비공	인	0.09	0	착오적용 (정통품 5-3-2)
	S/W 시험사	인	0.38	0	
	H/W 시험사	인	0.42	0	
내역서	UTP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마이크 케이블, 접지용비닐절연전선 (46 개소)	M	130%	100%	UTP 케이블 외 3종 물량 과다산정분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주제관 신축 소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794.72m²(지상2층/1동)
 - 소방공사 1식(자동화재탐지 · 유도등 설비공사)
- 사업비 : 319,680천원
-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9,680	296,600	23,080	7.22%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LED램프 외 6종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도급자재로 설계된 펌프 및 밸브를 관급자재로 변경
 - 펌프류 4종 : 12,325→3,726천원, 밸브 : 522→377천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관급자재로 반영
- 펌프 설치 노무비 조정(기계품1-6-1)
 - 펌프규격의 단위변환 오류로 상위규격의 펌프설치 노무비 적용
 - 펌프(20HP) : 20→15kW
 - 기계설치공 : 6.5→4.8인, 보통인부 : 2.5→1.5인
 - 1HP=0.736kW, 1kW=1.34HP

◆ 기타 착안사항 등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5. 건설기술용역

- ○○공원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12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126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 127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128
- ○○조성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129
- ○○체험루트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0
- ○○시가지 침수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131
-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32
- ○○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3
- ○○ 개발사업 외 1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134
- ○○○외 4개소 하천기본계수립 용역 135
-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36
- ○○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설계 용역 137
- ○○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138
- ○○○센터 신축공사 시공감리 용역 139
- ○○○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 140



○○공원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공원조성 138,000m²
- 용역비 : 935,893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35,893	866,058	69,835	7.5%

◆ 주요 심사내용

- 지반조사 코아튜브 자재조정 (토사~호박돌층)
 - 당초> 더블 370천원 변경> 싱글 106천원
- 공사비 효율방식의 실시설계비內 보고서 인쇄비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 제1호 파목, 제2호 차목에 보고서 관련 복사 및 인쇄비 산정
- 측량 및 토질조사 비용에 대한 현 품셈으로 조정
 - 당초> 품셈의 50% 변경> 품셈의 100% 적용
- 교통성 검토 항목 제외처리
 -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성 검토 대상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상 : 공원 부지면적 30만 m² 이상)

◆ 기타 착안사항 등

- 규정 외 불필요한 과업 제외 및 낮은 단가에 따른 부실설계 방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송배수관로 23.8km
- 용역비 : 816,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16,000	702,800	113,200	13.9%

◆ 주요 심사내용

- 지형현황측량 품셈내 보통인부의 제경비, 기술료 산정제외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측량업무종사자에 보통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산정대상이 아님
- 공사비요율에 의한 요율 적용시 분리 적용 실시
 - 현재 과업구성상 기계(양수시설)+토목(관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내 산업플랜트 100%로 처리됨에 따라 토목과 기계를 구분하여 요율 적용
- 수도노선측량 실제 연장 반영
 - 당초> 19km 변경> 24km
- 지반조사 기술료에 대한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의한 조정
 - 당초> 37.5% 변경> 50%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중에 맞는 요율적용 및 실제물량 반영으로 부실설계 방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도로지하시설물DB구축 L=224km
- 용역비 : 2,42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20,000	2,066,000	354,000	14.6%

◆ 주요 심사내용

- 기준점측량 품셈내 보통인부의 제경비, 기술료 산정제외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측량업무종사자에 보통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산정대상이 아님
- 도로시설물조사 인건비 및 시설물증감 계수 조정
 - 품셈내 지하시설물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도로시설물은 지상 시설물
이므로 작업요율성 150% 시설물 증감계수 0.73를 적용
- 도로시설물정위치편집 시간당작업량 및 시설물증감 계수 조정
 - 도로 상부시설물에 따른 시간당 작업량 150% 시설물 증감계수 0.73
를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품셈을 반영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하수관거정비 L=36km
- 용역비 : 1,164,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64,000	1,107,747	56,253	4.8%

◆ 주요 심사내용

- 측량 품셈내 보통인부의 제경비, 기술료 산정제외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측량업무종사자에 보통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산정대상이 아님
- 토질조사 기계기구 손료 조정
 -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의거 점토층 ~ 연암층 손료 조정
 $\therefore$ 점토층 1.36hr $\rightarrow$ 1.232hr, 연암층 1.36hr $\rightarrow$ 1.568hr
- 토질조사 연암층 심도 조정
 - 중계펌프장 기초부분 토질조사로 연암층 1m 심도 파악에 따른 토질조사 마무리 당초 > 2.0m, 변경 > 1.0m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일치여부 확인 후 적정품셈 반영



○○조성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기반시설, 지하주차장, 도로시설물 1식
- 용역비 : 1,281,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81,000	1,212,000	69,000	5.4%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산정조정
 - 일정공간내에서 감리수행은 차량이동이 불필요하나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기준 휘발유량의 30%를 적용 (10.0ℓ/일→3.0ℓ/일)
- 손해배상보험료 적용기준 조정
 - 요청) 용역 순원가 × 요율 ⇒ 심사) 용역 순원가 × 요율 × 부가세
-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최저요율 반영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최저요율을 반영
 - 당초> 제경비 114%, 기술료 25% 변경> 제경비 110%, 기술료 20%

◆ 기타 착안사항 등

- 일정공간내 조성되는 사업의 감리는 감리원의 공간이동편리하므로 적정 차량운행비를 적용



○○체험루트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조성면적 41,000m²
- 용역비 : 54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40,000	527,466	12,534	2.3%

◆ 주요 심사내용

- 불필요한 과업에 대한 삭제
 - 도시관리계획상 산지 및 초지가 없으므로 해당품셈 제외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산정시 사업비 조정
 - 당초) 요율 × 추정금액 변경) 요율 × 추정금액(VAT제외)
- 지반조사에 대한 지반조사표준품셈 요율 적용
 - 당초> 제경비 110%, 기술료 20% 변경> 제경비(재+노+경) 47%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업지시서 및 현장내 불필요한 내역 제외에 따른 원가 절감
- 총사업비 검토에 따른 요율적용 사업비 조정



○○시까지 침수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침수면적 138,000m²
- 용역비 : 63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30,000	610,000	20,000	3.2%

◆ 주요 심사내용

- 지형현황측량 미적용(link)에 따른 반영
 - 특급기술자 0인 → 0.35인, 고급기능사 0인 → 23.24인
- 지질조사 표준관입시험 과다 산정에 따른 조정
 - 당초) 240회 변경) 1회당 1m적용, 13m×8공=104회
- 지반조사에 대한 지반조사표준품셈 효율 적용
 - 당초> 제경비 110%, 기술료 25% 변경> 제경비(재+노+경) 41%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다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수량 반영으로 원가 절감
- 공중에 맞는 효율적용 및 누락물량 반영으로 부실설계 방지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다기능 하수저류조 설치 $Q=85,000\text{m}^3/\text{일}$
- 용역비 : 2,10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100,000	2,056,000	44,000	2.1%

◆ 주요 심사내용

- 처리시설, 차집관거 기준점 측량에 제외
 - 인접 지적 도근점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 교통성검토 투입기술자 조정
 - 도시관리계획과 병행되는 과업이므로 서론, 도시기본계획개요의 기술자 투입범위를 60%로 조정
- 도시관리계획내 각종영향성 검토 제외
 - 각종 개별검토 적용(환경,교통 등)에 따른 적용 제외
- 하천 수질분석 횟수에 대한 수자원개발표준품셈에 의한 적정횟수로 조정
 - 당초 측정지점수 6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 (216회→180회)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다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수량 반영으로 원가 절감



○○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처리시설 Q=43,000m³/일
- 용역비 : 2,10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10,000	1,437,000	73,000	4.8%

◆ 주요 심사내용

- 모형실험기구설치 비용산정 부분 재조정
 - 정액법에 의한 감각상각율 적용
 - ∴ 시험연구용자산 내용연수 3년 + 기계관련자산 내용연수 5년
 - 모형실험기구 43,100천원 → 26,106천원
 - 냉온 순환기 14,000천원 → 12,950천원
- 실험기구 운영 및 성과품 작성품 조정
 - 기술자 인원수 과다편성에 따른 75%수준 적용
-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술자 자문료 조정
 - 당초) 200,000원 변경) 100,00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다적용된 단가에 대한 적정단가 반영으로 원가 절감



○○ 개발사업 외 1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개요

- 과업규모 : 1지구 L=50.3km, 2지구 L=21km
- 용역비 : 1,417,7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17,700	1,246,831	170,869	12.1%

◆ 주요 심사내용

- 통합감리 산출인원방법 조정
 - 당초) 1지구 사업비 감리원수+ 2지구 사업비 감리원수
 - 변경) 1지구, 2지구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원수
-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최저요율 반영
 -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최저요율을 반영
 - 당초> 제경비 115%, 기술료 30% 변경> 제경비 110%, 기술료 20%

◆ 기타 착안사항 등

- 통합감리의 주요 목적은 예산절감에 있으며, 통합감리비 산출시 개별공사에 따른 감리원수 산정은 의미가 없음



○○○외 4개소 하천기본계수립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계획수립(길이 13km, 유역면적 15.62km²)
- 사업비 : 567,98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7,980	466,277	101,703	17.9%

◆ 주요 심사내용

- 하천기본계획 길이를 과업지시서의 과업량과 일치토록 조정
- 지형현황측량을 위한 고급기술자 인원수를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 공공측량 심사비의 제정비 및 기술료가 중복되어 감액
- 생태조사의 일위대가에 하천 개소수가 중복되어 변경(5개→1개)
-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을 항만공사에 준하여 적용
- 부가가치세에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하여 재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 L = 2.2km
- 사업비 : 267,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7,000	250,724	16,276	6.09%

◆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시 보어링 시추장비의 시간당 손율계수 변경
- 계획검토 및 기본설계 중 시설물계획의 인원 산정 시 중급기술자를 제외
- 안전검토 일위대가 단위를 개소당에서 100m당으로 변경 및 적용
- 지형현황측량 시 지방서 요구 축척에 따른 계수값으로 변경 적용
-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을 항만공사에 준하여 적용
- 부가가치세에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하여 재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지반조사 표준품셈,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설계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형측량 9,900m², 수심측량 80,000m²
- 사 업 비 : 727,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27,000	700,715	26,285	3.62%

◆ 주요 심사내용

- 멀티빔 자료처리 계획수립 건수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맞게 변경
- 멀티빔 자료처리 일수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맞게 변경
- 해상교통안전진단 기관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지반조사 표준품셈,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L = 8.0 km
- 사업비 : 826,1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26,170	807,135	19,035	2.30%

◆ 주요 심사내용

- 평판측량 인원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인원 조정
- 토질조사 깊이에 따른 수량 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손해배상공제 요율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
- 시험수수료를 한국품질기술연구소 및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시험수수료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센터 신축공사 시공감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물 3동(연면적 5,125.4㎡)에 대한 시공감리
- 사업비 : 242,8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2,830	231,460	11,370	4.68%

◆ 주요 심사내용

- 현지사무원 급료산정 시 보통인부 노임을 공사부분 노임단가에 서제조 부문 노임으로 변경
- 현지사무원 급료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산정되므로 공사기간이 9개월로 제외
- 감리원의 노임을 기존 5단계의 고급감리원 단가를 개정 3단계의 감리 사보 단가로 변경
- 기술지원 감리원 수를 총 상주감리원수에 15% 적용하여 재산정
- 부가가치세에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하여 재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



○○○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000	169,810	30,190	15.09%

◆ 주요 심사내용

- 국외여비 중 일비 산정 시 책임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산정
- 숙박비 산정 시 출장일수가 아닌 실제숙박일로 재 산정
- 교통비는 KTX 요금을 적용하여 재산정
- 연구원 자체 회의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제외
- 학술용역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므로 유인물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적용을 제외
- 국내여비(출장비)는 현지조사 및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현지조사비는 중복되어 삭감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6. 일반용역

-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43
- ○○ 정비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44
- ○○건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45
-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6
- ○○○ 기록화사업 용역 147
- ○○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 .. 148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149
- ○○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용역 150
-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51
- ○○○대전 개최 행사 대행용역 152
- ○○도시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153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1식(면적 : 80,000m²)
- 사업비 : 174,57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74,570	154,264	20,306	11.6%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 중 현장 작업인부 및 유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인건비 4대 보험료 2012년 고시율에 맞게 조정
- 현장운영비의 작업인부인 특별인부를 보통인부로 조정
- 현장운영비 중 장비임차료 조정
 - 현장여건상 현장차량이 불필요하여 차량관련 비용 제외
- 직접경비 중 회의비 조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8)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의거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현장운영비 중 현장인부의 제보 보험료, 차량비, 회의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정비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1식(면적 : 4,545㎡)
- 사업비 : 394,384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4,384	347,957	46,427	11.8%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조사원의 주재비 조정
 - 현장상주 불필요로 주재비를 여비로 조정
- 현장조사원과 현장인부 및 유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인부의 주휴수당 조정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5일을 만근한 자에게만 지급
- 장비사용 일수 조정
 - 발굴작업에 사용되는 장비(굴삭기)가 현장 작업일수 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어 전체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 현장작업일수와 투입인원을 산정하여 현장작업 일수를 조정하고 주휴수당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발굴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조사현장 여건 맞게 적용되도록 함



○○건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1식(면적 : 3,288m²)
- 사 업 비 : 245,63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5,630	212,410	33,220	13.5%

◆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산정 시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조정
 - 지형 : 산지→평지
- 현장운영 작업 일수 조정
 - 문화재 발굴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업일수를 60일에서 49로 조정
- 현장작업 일수 조정에 따른 현장운영 직접경비인 장비임차료, 각종 운영비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직접인건비 산정 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환경요인, 유적분류의 보정계수 적정하게 적용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의 내용과 용역 과업내용 동일하게 적용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폐기물처리 6,974ton(폐콘크리트 4,934, 폐아스콘 2,040)
- 사업비 : 127,77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7,773	123,358	4,415	3.46%

◆ 주요 심사내용

- 공사현장 인근 폐기물 처리장 실제 운반거리 적용
 - 운반거리 : 20→10km
- 조사된 운반거리에 토목공사 표준품셈 적용하여 운반비 조정
 - 운반비 : 4,545→3,912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발주부서 설계단가, 건설폐기물협회 운반단가, 경상남도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검토 심사금액 적용



○○○ 기록화사업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록화사업 용역 2개소
 -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기록용 사진 등 촬영, 보고서 작성 등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0,000	90,680	9,320	9.3%

◆ 주요 심사내용

-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원 참여일수 조정
 - 연구원, 연구보조원 : 170일 → 140일
 - 보조원 : 150일 → 140일
- 보고서 발간비 조정
 - 용지대 : 수량조정(200매→111매)
 - 조판료 : 표지 및 칼라(24,870원→20,500원)
 - 교정 및 가제본료 : 삭제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규정 적용
- 보고서 발간비 인쇄물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원가 절감



○○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압시험 49개소, 수밀시험 294개소, cctv조사(8,895m)
- 사업비 : 168,96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8,960	132,000	36,960	21.8%

◆ 주요 심사내용

- 일반용역 원가계산 제비율에 맞게 조정 : 기술료 삭제
- 일위대가 조정
 - 하수관내 cctv조사 일 작업량 조정 : 270m → 420m
 - 하수관 수밀시험 인력 및 시험기구 품 조정
 - 특별인부 : 0.25인→0.522인, 보통인부 1.00인→0.343인
 - 시험기구 : 1.08시간→1.37시간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규정 적용
- 일 작업량 및 인력, 시험기구 품 등을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8개소
- 사업비 : 5,911,257천원
- 사업기간 : 2013~2015(3년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11,257	5,684,533	226,724	3.8%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2,075,723천원 → 1,993,072천원
 - 용역 과업에 맞게 인원 조정 : 중급기술자 1명 감
- 경비 조정
 - 복리후생비 조정 : 149,619천원 → 134,828천원
 - 차량유지비 조정 : 59,998천원 → 51,848천원
 - ⇒ 시군 소유차량 감가상각비 제외
 - TMS운영비 조정 : 322,232천원 → 244,671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251호 (2012. 5. 7)) 운영대가 산정기준 적용
- 물가정보지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 적용

〇〇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침체어구 인양 404톤, 해상운반, 육상하역, 폐기물처리, 어장측량, 어장철거 및 재시설 40개소
- 사업비 : 886,98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86,985	836,698	50,287	5.7%

◆ 주요 심사내용

- 인양폐기물 적재시 크레인(10톤)을 굴삭기(1.0m³)로 교체 적용
- 작업보조선 잠수사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2인 → 1인
- 인양틀 규격 조정 : 2.0m → 1.5m
-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 244,336원 → 230,000dnjs
- 제경비 조정 : 일반관리비 6% → 5%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에 맞는 기계 투입 및 인원 조정으로 단가 조정
-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일반용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폐기물처리 8,987ton(건설폐기물 8,891, 폐목재 96)
- 사업비 : 229,5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9,570	208,415	21,155	9.22%

◆ 주요 심사내용

- 공사현장 인근 폐기물 처리장 3개소 평균거리를 폐기물운반거리 적용
 - 운반거리 : 25→17km
- 조사된 운반거리에 토목공사 표준품셈 적용하여 운반비 조정
 - 운반비 : 10,302→8,139원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삭기 버킷계수·작업효율 및 덤프트럭 적재 시간·운반 평균주행속도·적하시간 등을 적용하여 운반비 산정
 - 폐기물운반트럭 15톤과 24톤 중 최저 운반비가 산출되는 24톤 기준 적용
 - 유류비는 계약심사 당시 평균유가(한국석유공사 발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경상남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여부 등



○○○대전 개최 행사 대행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참가기업 120개사 322부스(7,826㎡)
- 사업비 : 415,91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15,910	387,148	28,762	6.92 %

◆ 주요 심사내용

- 사무국 근무인원 대비 레이저프린터가 과다 계상되어 프린터 장비임차료 조정(2→0대, 복사기 대체)
- 행사 일정이 4일로 과다 계상된 숙박비 조정(4→3일)
- 회의장 미사용 시간까지 임대료가 계상되어 실사용 예정인 장소대관시간 조정(회의장 임대 : 24→13H)
- 개막식 부대설비(음향 및 조명설비)가 중복 계상되어 수량조정
-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인력의 과소배치에 따른 적정 인원으로 조정
 - CECO 인력배치기준 적용 : 청소 3→8명, 경비원 3→7명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행안부 예규 제392호)



○○도시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3,962m(우수관 28,132m, 우수관 15,830m)
- 사업비 : 164,94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2년 8월 까지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4,945	137,018	27,927	16.93%

◆ 주요 심사내용

- 노무비 계산식 조정

공 종	규 격	당 초	조 정	비 고
노무비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times (16/12 \times 25/20)$	노임단가 $\times 1$	상여금 등 중복계상
	초급기술자	"	"	

- 기술자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
- 임금단가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됨
- 평균근무일수 : 22.11일

◆ 기타 착안사항 등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경부 고시 제2011-77호)

7. 물품구매 및 제조

-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 농자재 구입 157
- 종합분석실 정밀분석장비 구입 158
- 종합검정실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 구입 159
- 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 160
- ○○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제조사업 161
-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162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163
- 고소작업대 구입 164
-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 165
-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166
- 전자도면 검증시스템 및 모바일현장조사 시스템 구매 167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장비 도입 168
- 종합운동장 전광판 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설치 169

• ○○문화예술회관 범종제작	170
•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171
• 배합사료 구입	172
•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173
•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작 구매	174
• 모바일앱 제작 및 검사장비 구입	175
• 약품보냉고 구입	177
• 시약 및 초자류 구입	178
• 지능형홈 마케팅지원관 신규컨텐츠 구축	179
• 가스농도측정기 구입	180
• 교육용 제세동기 및 패드 구입	181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 농자재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완효성 비료 1,238포, 축분퇴비 1,886포
- 사업비 : 39,774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774	37,776	1,998	5.0%

◆ 주요 심사내용

- 도내 대리점 및 본사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가 또는 최저가 적용
 - 완효성비료 : 26,263원 ⇒ 24,984원(△1,279원)
 - 축 분 퇴 비 : 3,850원 ⇒ 3,630원(△220원)

◆ 착안사항

- 비료 및 퇴비의 경우 국내 대형 제조사인 남해화학, 동부한농, 풍농, KG케미칼, 조비 등에서 거의 독점하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도내에 회사별로 권역별 대리점이 있음(각 5개 내외 정도)
- 완효성 비료의 경우 비료의 종류별(성분함량이 다름)로 포당 최대 4,000원 차이가 남
 - ⇒ 발주청에서 최저가 계약시 제품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 구역의 주민에 대한 농자재 지원임을 감안하여 평균 단가 적용함.
- ※ 축분퇴비의 경우,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아 최저가 심사금액 적용



종합분석실 정밀분석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초순수 제조장치 등 7종
- 사업비 : 55,993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5,993	53,410	2,583	4.6%

◆ 주요 심사내용

- 회전증발농축시스템(농축기) : 3,520천원 ⇒ 3,300천원(△220천원)
- 회전증발농축시스템(진공펌프) : 2,167천원 ⇒ 2,035천원(△132천원)
- 회전증발농축시스템(냉각수순환장비) : 3,520천원 ⇒ 1,650천원(△1,870천원)
- 일반냉장고(346리터) : 629,200원 ⇒ 620,000천원(△9,200원)

◆ 착안사항

- 도내 업체 및 품목별 경남관할 총판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최저가 적용



종합검정실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기 1식
- 사업비 : 19,98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980	18,700	1,280	6.4%

◆ 주요 심사내용

-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기(1set) : 19,980천원 ⇒ 18,700천원(△1,280천원)
 ※ 분광광도기내 구성물품으로 연동펌프키트, 악세서리 데이터콘트롤 키트 가격 포함

◆ 착안사항

- 도내 업체별 견적가를 조사한 결과 동일품목 최저가 금액 적용
- 분광광도기의 경우 전국에 판매업체가 있어, 경쟁입찰로도 구매가 가능한 물품임(예산절감 가능)



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지방분해기외 12종
- 사업비 : 22,518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518	20,624	1,894	8.4%

◆ 주요 심사내용

- 체지방분해기 : 1,400천원 → 1,397천원
- 전동꺼꾸리 : 1,310천원 → 1,300천원
- 벨트마사지 : 385천원 → 330천원
- 전자식체중계 : 385천원 → 350천원
- 아령정리대 : 990천원 → 500천원
- 트위스트운동기 : 550천원 → 440천원
- 테이블롤라 마사지기 : 715천원 → 577천원
- 골반운동기 : 2,530천원 → 2,035천원

◆ 착안사항

- 도내 업체별 견적가를 조사한 결과 최저가 금액 심사금액으로 적용



○○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제조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입상활성탄 재생탄 제조(414m³) 및 신탄 투입(141m³)
- 사업비 : 186,02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86,020	178,814	7,206	3.9%

◆ 주요 심사내용

- 재생 전·후 운반비의 경우 사업장과 최단거리 업체를 기준으로 경비를 환산한 금액보다 시장조사 가격이 더 낮음에 따라 운반에 따른 경비 조정
 - 재생전 운반비(1m³) : 23,540원 ⇒ 9,900원(△13,640원)
 - 재생 후 운반비(1m³) : 11,770원 ⇒ 6,450원(△5,320원)

◆ 착안사항

- 전국 입상활성탄 재생탄 재생 및 신탄 투입에 따른 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시중가격을 조사한 결과 심사요청한 금액이 최저가임에 따라 심사요청액 적용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동혈액분석기 1set
- 사 업 비 : 51,0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1,000	48,950	2,050	4.0%

◆ 주요 심사내용

- 자동혈액분석기 1set : 51,000천원 ⇒ 48,950천원(△2,050천원)

◆ 착안사항

- 도내(부산 포함) 총판 및 대리점, 판매업체별 견적가를 조사한 결과 타 시군 기심사금액 적용 및 최저가 적용
- 규격서에 따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컴퓨터 포함) 등 전구성품을 포함 금액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동시방제약제 22,126봉
- 사 업 비 : 106,205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6,205	92,929	13,276	12.5%

◆ 주요 심사내용

- 농약(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동시방제약제)
 - 4,800원 ⇒ 4,200원(△600원)

◆ 착안사항

- 도내 농약 대리점 및 도매점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 금액 적용
- 규격서(3가지 유효성분 중 택 1)에 적합한 농약제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장 단가가 낮은 “무사미” 가격으로 심사
 - 규격 농약제 : 뉴투톱(입), 뉴명콤비(입), 무사미(입)



고소작업대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고소작업대(시저리프트) 1대
- 사업비 : 24,75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750	20,350	4,400	17.8%

◆ 주요 심사내용

- 전국 업체별 견적가를 조사한 결과 최저가 금액 심사금액으로 적용
 - 시저리프트 : 24,750천원 → 20,350천원

◆ 착안사항

- 구입요청 물품(미국 Genie Industries)이 외국제품으로 단가가 높아 동등한 사양의 국내 고소작업대 전문업체 제품 선정 예산 절감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업기상관측장비(AWS) 1대
- 사업비 : 24,015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015	21,945	2,070	8.6%

◆ 주요 심사내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등록된 기상관측 장비 취급점 및 조달청, 기 심사 자료를 참고로 가격조사를 하여 최저가 금액을 적용
 - 농업기상관측장비(AWS) : 24,014,650원 ⇒ 21,945,000원(△2,069,650원)

◆ 착안사항

- 기상관측장비 판매업체의 경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등록된 도내 업체는 2개소(진주, 거창)로 장비 판매 위주로 하고 있어, 전국단위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였음
- 일조센서의 경우 발주청이 제출한 규격서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제출한 견적 중 국내특허등록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함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서 1,827권
- 사업비 : 29,873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873	26,822	3,051	10.2%

◆ 주요 심사내용

- 업체별 가격 조사 결과 최저가 견적가 심사금액 적용
 - 도서정가별 10% 일괄 조정

◆ 착안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 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범위내에서 할인판매 가능토록 규정(제22조 3항)



전자도면 검증시스템 및 모바일현장조사 시스템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모바일서버, 터치모니터, 모바일기기, PC 등
- 사업비 : 56,76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760	49,040	7,720	13.6%

◆ 주요 심사내용

- 해당 시스템 구축업체 및 전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품목별 최저가 금액 적용(부가세 포함)
 - 터치모니터 : 5,170,000원 ⇒ 3,960,000원(△ 1,210,000원)
 - 모니터용책상 : 660,000원 ⇒ 509,200원(△ 150,800원)
- 중급기술자 투입일수 : 53인 12,177,000원 ⇒ 47인 10,802,353원(△ 1,374,647원)
 - 데이터구조설계, 소프트웨어설치 : 5일 ⇒ 2일(설계서 상 공정표 기준)
- 부가세 10% 절감
 - 모바일서버 【Quad Core 3.66, MS SQL Express, OS(Win2008Server)】
 - 모바일기기 갤럭시탭, 책상틀, 관제용PC i3 3.06Ghz, OS(Window7)

◆ 착안사항

- 발주청에서 조사한 업체의 견적가(부가세 포함)에 부가세를 채부과한 금액으로 계약심사 요청하여 이중부과된 금액 절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장비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GPS 통합형 핸드헬드 수신기(GeoXT3000, Juno SB),
GPS 오레곤550, 현장용 GPS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 사업비 : 17,545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7,545	17,116	429	2.4%

◆ 주요 심사내용

- GPS핸드헬드수신기(GeoXT)(소프트웨어 포함)의 국내총판 등 도내 판매업체의 가격조사로 품목별 최저가 금액 적용
 - 통합형 핸드헬드 수신기(GeoXT) : 9,075천원⇒8,800천원(△275천원)
 - 현장용 GPS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 1,694천원⇒1,540천원(△154천원)

◆ 착안사항

- GPS핸드헬드수신기(GeoXT)는 미국 Trimble사 제품으로 국내 (주)선도소프트와 (주)지오시스템의 총판을 두고 있음
- 경쟁입찰로 구매가 가능한 물품으로, 입찰에 따른 계약시 자체 수의 계약보다 예산절감 가능



종합운동장 전광판 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어용 컴퓨터 외 4개 부품 구입 및 설치
- 사 업 비 : 20,813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813	18,519	2,294	11.0%

◆ 주요 심사내용

- 제 경 비 : 1,336,278원 ⇒ 0원(△1,336,278원)
- 기 술 료 : 749,478원 ⇒ 0원(△749,478원)
- 부가가치세(10%) : 1,892,174원 ⇒ 1,683,598원(△208,576원)

◆ 착안사항

- 종합운동장 전광판 수리의 경우 단순 자재 구입에 따른 설치로 제경비, 기술료를 심사금액에 미적용
- ○○시 종합운동장 전광판의 경우 기설치한 업체에서만 제작 및 수리가 가능하여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웠음



○○문화예술회관 범종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범종 1식
- 사업비 : 451,914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1,914	402,054	49,860	11.0%

◆ 주요 심사내용

- 발주청에서 요청한 산출내역을 근거로 가격정보집, 견적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노임단가 등을 참조하여 심사평가금액 적용
 - 범종제작 1식 : 451,914천원 ⇒ 402,054천원(△49,860천원)

◆ 착안사항

- 범종의 제작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3%→6%), 이윤(10%→20%)을 상향 조정하였음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범건열멸균기 등 6종
- 사업비 : 19,932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932	19,118	814	4.0%

◆ 주요 심사내용

- 전국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 금액 적용
 - 초저온냉동고 : 5,654,000원 ⇒ 4,840,000원(△814,000원)

◆ 착안사항

- 미생물 배양장비의 경우 전국에 판매업체가 있어, 경쟁입찰로 구매가 가능한 물품으로 입찰에 따른 계약시 자체 수의계약보다 예산절감 가능



배합사료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양어사료 20,500kg
- 사 업 비 : 62,6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2,600	52,300	10,300	16.5%

◆ 주요 심사내용

- 치어(1~2.6mm, kg당) : 3,800원⇒2,800원(△1,000원)
- 치어(4~10mm, kg당) : 2,900원⇒2,500원(△400원)
- 조단백질 45%이상, 조지방 6%이상 성분사료임

◆ 착안사항

- 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으로서 1년에 1~2번의 가격변동이 있음
- 제조사별(국내 및 수입사료 포함)로 치어의 규격에 맞게 조단백질과 조지방 성분을 배합하여 양어사료 생산
⇒ 입찰 공고시 제품의 영양성분 수치를 세분화(조단백질 50%, 조지방 10%이상)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차량용 블랙박스 350개, 32GB, 설치비 포함
- 사업비 : 62,6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0,100	73,500	26,600	26.6%

◆ 주요 심사내용

- 차량용 블랙박스(CARPA-120) 단가 : 286천원→210천원
 -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동일 이상의 성능 및 규격 조사 후 설치비 포함 심사

◆ 착안사항

-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종은 종류가 다양
-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성능이상의 제품은 네오콤사의 GEMII(TW) 와 (주)DS텔레콤사의 CARPA-120이 있음
- 네오콤사의 GEMII(TW)는 린시스(인천시 소재)를 대리점으로 두고 있고 (주)DS텔레콤사의 CARPA-120는 삼보카센터(통영)를 경남지역 대리점으로 두고 있음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작 구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
- 사업비 : 399,371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9,371	389,161	10,210	2.6%

◆ 주요 심사내용

-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도와 성능이 비슷한 동일 차량(일부 성능 차이)을 제작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추정가격 자료를 참고로 심사
 - 산정방법 : 서울시 추정가격-서울시만 있는 성능 가격+우리도만 있는 성능가격-일부 물품가격을 거래 실례가로 조정 한 차액분
⇒ 351,260천원-4,718천원+10,091천원-2,850천원
- 실내 냉방기(벽걸이 10평형) : 1,800천원→850천원
- 모니터(LG 24") : 530천원→300천원

◆ 착안사항

- 소방차량의 경우 제작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거의 독점 형태로 운영
- 위 물품은 제조로서 실제 설계서에 의거 심사를 하여야 하나 발주부서에서 설계서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물품 구매형태로 계약심사



모바일랩 제작 및 검사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모바일랩 1식, 검사장비 5종
- 사업비 : 164,5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구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증감률
계	164,500	150,309	14,191	△8.63%
모바일랩	78,000	70,014	7,986	△10.24%
검사장비	86,500	80,295	6,205	△7.17%

◆ 주요 심사내용

① 모바일랩

- 메인차량(그랜더스타렉스 3번 CVX 럭셔리) : 24,200천원→21,390천원(△2,810천원)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물품,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임
- 콘트롤러, 출입문, 루프에어컨, 램프, 각종 부자재 등 : △5,176천원
 - 차량제작사 견적가, 인터넷 쇼핑몰 거래가 중 최저가에 설치비 반영

② 검사장비 5종

- 흡광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 25,000천원→25,000천원
 - 조달청 입찰자료 중 기초금액, 실거래가 검토결과 요청액 적정
- ELISA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 20,000천원→16,450천원(△3,550천원)
 - 조달청 입찰자료, 기심사가, 실거래가 중 최저가격 적용



- 조직과쇄기 : 18,000천원→17,545천원(△455천원)
 - 조달청 입찰자료 중 기초금액, 실거래가(물가인상률 반영) 고려
- 공기포집기 : 22,000천원→20,000천원(△2,000천원)
 - 강원도 외자구매가에 관세, 부가가치세 감면분 가산
- 데이터 프로세싱시스템 : 1,500천원→1,300천원(△200천원)
 - 인터넷 거래가 적용

◆ 착안사항

- 이동차량 제작 시 반드시 운전석과 뒷칸(작업실) 사이 겹벽 설치, 주행 중 승차인원은 3명이어야 하므로 뒷칸에 의자 배치 불가
 - ⇒ 그랜드스타렉스 3인밴을 기반으로 제작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 중 이동작업형으로 분류됨
- 이동업무용 차량이므로 캠핑카로 오인받을 수 있는 품목(침대, 취사용 버너) 삭제
 - ※ 캠핑카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 부과(물품가격의 5%, 3,900천원)



약품보냉고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약품보냉고 1세트
- 사업비 : 66,0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6,000	57,303	8,867	13.17%

◆ 주요 심사내용

- 약품보냉고(MPR1411R) : 16,765천원→12,766천원
- 동일 물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자료 확인 후 투찰율, 액세서리 가격 등을 감안하여 평균 입찰가 적용
 - 세트당 10,560천원~16,200천원 입찰

◆ 착안사항

- 위 물품의 경우 일본 산요사 제품으로 경남지역 대리점으로 유현하이텍과 부영메디칼을 두고 있음
- 조달청 입찰가 확인결과 경남지역의 입찰가가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임
- 위 물품의 경우 온도기록계와 에리호출시스템이 액세서리지만 대부분 세트로 구매하여 사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약 554종, 초자류 432종
- 사 업 비 : 570,286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구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시약류	289,529	276,694	12,835	4.4%
초자류	280,757	267,682	13,075	4.6%

◆ 주요 심사내용

- 시약 품목별 단가 감조정 : 2,100원~393,700원
- 초자 품목별 단가 감조정 : 900원~583,300원
- 품목별 요청액, 지역대리점 견적가 등 비교하여 최저가로 심사

◆ 착안사항

- 시약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으로 국내 총판 및 총판대리점, 지역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초자 또는 기타 물품의 경우 다품종으로 실거래가 적용 어려움
- 차후 기초가격 조사시 전년도 단가계약 금액 확인 후 물가상승 분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지능형홈 마케팅지원관 신규컨텐츠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차원 얼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미디어 테이블 각 1식
- 사업비 : 30,14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140	21,430	8,710	28.89%

◆ 주요 심사내용

- 3차원 얼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 12,980천원→9,680천원(△3,300천원)
 - 국내 유일 공급사인 퍼스텍(주)의 견적가에 판매수수료 10%부가한 가격임
- 미디어 테이블(SUR40) : 17,160천원→11,750천원(△5,410천원)
 - 최근 입찰가와 삼성전자 B2B전문점을 통해 받은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착안사항

- 3차원 얼굴인식기 3D Visiongate는 미국 L-1 Identity Solutions사 제품으로 퍼스텍(주)가 국내 유일의 공급사이며, 수요가 적어 도내 별도의 대리점은 없으며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므로 제품설치는 본사 출장 설치 또는 지역 업체에 외주 가능하다고 함
 - KISA 얼굴인식 알골리즘 성능인증 보유업체 중 퍼스텍(주)가 유일한 국내 3D 얼굴인식기 취급사임
 - ※ KISA 얼굴인식 알골리즘 성능인증업체 : 퍼스텍(주), 오리엔탈종합전자(주), 한국인식산업(주)



가스농도측정기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스농도측정기 20개
- 사업비 : 42,0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2,000	37,400	4,600	10.95%

◆ 주요 심사내용

- 가스농도측정기 단가 감조정 : 2,100천원→1,870천원(△230천원)
⇒ 타기관 납품가(국내총판 세금계산서), 인터넷 거래가격 중 최저가 적용

◆ 착안사항

- 동 제품은 일본 New Cosmos사의 XOS-326 모델로서 센서케이블 부착된 유일한 제품이므로 종로계측기(국내총판)를 통해 독점 공급
- 요청물품보다 가격이 600천원정도 저렴한 흡입펌프 및 튜브를 활용한 흡입식 측정기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교육용 제세동기 및 패드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육용 제세동기 85대, 패드 320조
- 사업비 : 85,425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5,425	79,190	6,235	7.3%

◆ 주요 심사내용

- 교육용 제세동기 단가 : 660천원→601천원(△59천원)
 - ⇒ 국내 제조사(씨유메디컬, 메디아나, 나눔테크) 제품 거래가(견적가, 인터넷거래가)의 평균단가 적용
 - ※ 필립스, 래어달, GE 등의 수입품은 가격이 월등히 높음
- 제세동 패드 7종 340조 : 29,325천원→28,105천원(△1,220천원)
 - ⇒ 각 제품의 국내총판 또는 대리점 판매가와 요청액 중 낮은 가격

◆ 착안사항

- 제세동기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세동기와 패드는 분리발주를 권고
 - ※ 제세동 패드의 경우 5개사 제품 중 CU-ER이 67%를 차지

[illegible]



2012년 ○○정보지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월 5,500부, 국판 25절, 컬러 4도, 아트지 양면, 면수 20
- 사 업 비 : 36,000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6,000	30,840	△5,160	14.3%

◆ 주요 심사내용

- 용지금액 : 518,772원 → 198,451원(△320,321원)
 - 작업설 감 조정, 국전지 비율 적용 : 16절, 연수 8.8⇒25절, 연수 4.4
- 전자조판 및 편집료 : 508,000원 → 451,000원(△57,000원)
 - 4×6배 판→국판, 9포인트 이하 10% 가산(8포인트)
- 필름출력비 : 257,120원 → 192,840원(△64,280원)
 - 4판→3판 적용(표지 및 내지 동일 재질)
- 인쇄판료 및 인쇄비 : 986,630원 → 302,377원(△684,253원)
 - 인쇄료 산출내역 오류 수정
- 일반관리비 : 0원 → 180,023원(180,023원), 0% → 10%
- 이윤 : 250,910원 → 356,362원(105,452원), 13.3% → 20%



○○○○○○○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홍보 책자 5,000부(4도, 10절), 리플렛 8,000부(4도, 10절)
- 사 업 비 : 20,682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구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20,682	16,667	4,015	19.41%
홍보책자	19,337	15,492	3,845	19.88%
홍보리플렛	1,345	1,175	170	12.64%

◆ 주요 심사내용

① 홍보책자

- 용지대 감 조정 : 3,454,301원 → 3,352,788원(△101,512원)
 - 손지울 및 작업설 적용, 인쇄용지 거래단위인 4*6전지 500매 단위로 산출
 - 용지가격은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시중거래가격 적용
- 전자조판 및 편집료 조정 : 2,570,400원 → 2,249,100원(△321,300원)
 - 원색인쇄 조판료 산출 오류 수정, 파일제공 10% 감산 적용 조정
- 인쇄료 조정 : 3,327,599원 → 1,500,930원(△1,458,024원)
 - 통수 산출 후 인쇄료 단가 및 할증료 적용 등 산출방법 오류 수정

② 홍보리플렛

- 인쇄료 조정 : 275,904원 → 187,440원(△88,464원)
- 기타 추가비용 조정 : 300,000원 → 240,000원(△60,000원)
 - 접지비 시중가(장당 30원, 8,000부) 적용, 감조정



청소년 체험활동 교재 인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000부, 140면(표지4면, 내지 136면 양면)
- 4×6배판 16절, 표지 4도, 내지 1도, 읍셋인쇄

○ 사업비 : 15,848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848	7,187	8,661	54.6%

◆ 주요 심사내용

○ 전자조판 및 편집료

- 파일제공으로 인하여 표지 50% 감, 내지 60% 감

○ 필름출력비 : 계산착오, 16절 적용

○ 관리비 조정 : 14% → 10%

○ 이윤 조정 : 15% → 20%

◆ 착안사항

○ 제본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계산 착오로 절감액이 많음



경남관광가이드북 인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국문 50,000부, 영문외 2종 각 20,000부
- 16절, 4도, 옵셋인쇄(표지4면, 내지 52면 양면), 부분코팅 등

○ 사 업 비 : 102,308천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2,308	87,816	14,492	14.1%

◆ 주요 심사내용

- 용지료 단가조정 : 물가정보지, 업체견적서 중 최저가 적용
 - 미스틱지 180천원→170천원, 스노우지 65,000원→56,060원
- 전자조판료 및 편집료 : 증판으로 미산정
-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료 : 표지 부분코팅으로 2절기준 적용
- 관리비(14% →10%) 및 이윤(25% → 20%) 조정

◆ 착안사항

- 인쇄비를 판 기준→연 기준으로 산정
- 제본비 계산 오류분 증액 산정
- 기타비용 중 접지료는 업체견적 및 요청액의 평균가 적용
 - 업체별로 부당 접지 1회 요금 : 0원~25원

9. 시군 자체 계약심사

• 창원시 ○○로 자전거도로설치 공사	191
• 창원시 ○○ ○○로 도로 재포장 공사	193
• 진주시 ○○○ 수련관 리모델링공사	195
• 통영시 2012년 해안가 ○○소나무림 종합방제사업	196
• 사천시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198
• 밀양시 ○○마을 하수도개량공사	200
• 밀양시 독립운동가 흉상제조 설치	201
• 거제시 ○○중계펌프장 수문 설치공사	202
• 양산시 ○○소류지 제당 보강공사 원가심사	203
• 의령군 ○○산 권역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등산로 조성사업) ..	204
• 의령군 ○○지구 절개지 정비사업	206
• 창녕군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민원해소)	208
• 고성군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9
• 남해군 ○○읍 도시계획도로(소로 2-13, 대판-KT) 개설공사 ..	211
• 남해군 ○○면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2
• 남해군 ○○선착장 연장공사	213
• 하동군 ○○ ○○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214
• 함양군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15
•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용역 ..	217
• 거창군 ○○읍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218
• 합천군 ○○(외토제) 정비사업	219



창원시 ○○로 자전거도로설치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전거 도로설치 L=1,434m, B=4.5m
- 사업비 : 1,564,000천원
- 사업기간 : 2012. 06. ~ 2013. 0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64,000	1,038,500	525,500	33.6%

◆ 주요 심사내용

- 보도확장 공법변경 : 보도브라켓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

☆ 태풍·해일 등의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항만구역(마산항)을 통과하는 해안 도로구간에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때 보도바깥 호안옹벽에 폭 1.6m의 보도브라켓(sidewalk bracket)을 설치하여 보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해안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 콘크리트타설 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설계금액 대비 33.6%인 525,50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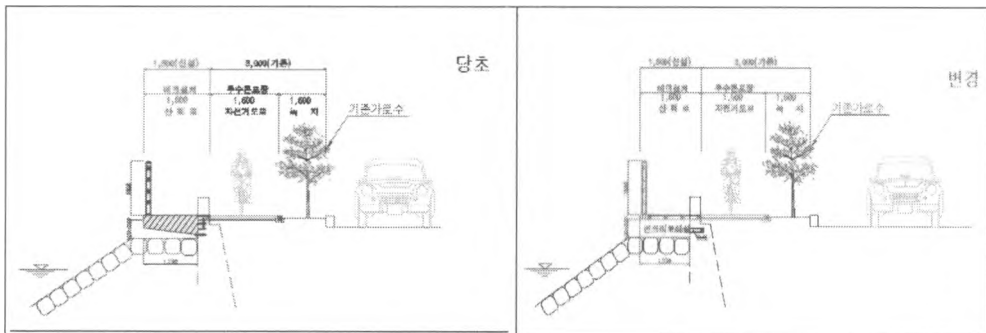
— 당해도로의 보도바깥 비탈면은 호안피복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복석 천단과 보도면과의 높이 차는 0.5m 정도임



- 태풍 시 바람과 조류가 강한 마산항의 경우 해양쓰레기가 피복석 상단부와 보도브라켓 사이에 유입, 청소 문제 발생
 - 파랑 등에 의하여 바닷물이 튀어 올라 금속재(브라켓, 지지볼트)의 부식을 촉진시켜 시설물의 수명 단축 초래
 - 구조물내의 보도바닥재(데크)가 태풍·해일에 따른 월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우려
- ※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MAEMI)”사례로 보면 마산항의 관측조고와 예측조고의 차이는 약 245cm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무분별한 보도브라켓(sidewalk bracket) 설치를 피하고 호안 피복석 상단부에 “철근콘크리트슬래브 시공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절감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 기타 착안사항 등

○ 해안도로 호안구조물 설계 시 조위·파압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 해안가 도로의 경우 태풍·해일에 의한 이상조위 및 월파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보도브라켓(sidewalk bracket)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방안을 강구



창원시 ○○ ○○로 도로 재포장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 덧씌우기 A=900.6a
- 사업비 : 594,978천원
- 사업기간 : 2012. 10. ~ 2012. 1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4,974	424,090	170,888	28.7%

◆ 주요 심사내용

☆ 동지역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2호선으로 중차량의 교통이 많은 왕복 4차로인 간선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전면절삭 덧씌우기” 보수방법으로 설계하였으나

- 계약심사를 통하여 “부분적인 패칭·절삭 덧씌우기”로 변경하여 당초 설계 대비 28.7% 상당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

○ 기존의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보수공법 변경

- 현장조사 및 노면파손 원인을 파악한 결과 중차량 교통량의 증대에 의한 파손·균열에 따라 포장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을 찾아내어 아스팔트포장 두께를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균열 및 침하부분 패칭 후 덧씌우기”로 변경토록 검토

○ 부분적인 절삭으로 기존포장면의 아스콘파쇄공사비 및 폐기물처리 비용절감



- 아스콘 절삭공사비 절감 : → 119,652천원
- 폐아스콘 운반·처리비 절감 : → 51,23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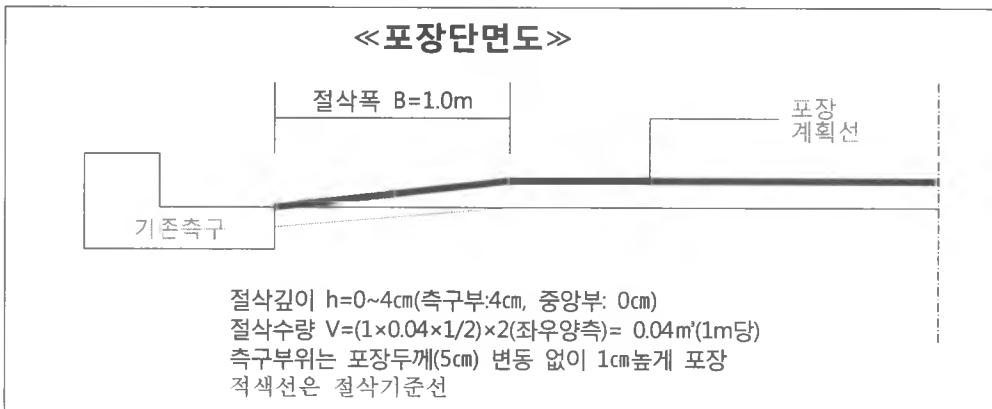
○ 균열이 발생한 곳에서의 반사균열 억제 방안 검토

- 기존포장의 균열상태 및 파손원인을 파악하고 균열·침하 등 파손 유형에 따라 덧씌우기 실시 전 패칭 후 포장

※ 포장강도 부족두께 확보 및 포장의 내구성 증대 효과

○ 반복적인 덧씌우기 포장에 따른 포장면과 배수구조물과의 접촉부 단차 문제 해소방안 검토

- 길어깨 또는 L형측구측 폭 1m까지 부분절삭 후 덧씌우기포장 실시



◆ 기타 착안사항 등

- 아스팔트포장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파손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포장의 공용성을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



진주시 ○○○ 수련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리모델링 지하1층, 지상1~4층 3,309㎡
- 사업비 : 470,230천원
- 사업기간 : 2012. 02. 27 ~ 05. 1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70,230	414,324	55,906	11.9%

◆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비 조정
 - 컨테이너 가설창고 건물내 여유공간 창고 사용가능 : 1개소 ⇒ 제외(감 437,016원)
 - 이동식 강관말비계 : 12대 ⇒ 5대(총별 1대)로 조정(감 457,245원)
 - 건축물보양비(테라조, 타일) 불필요 : (감 3,701,412원)
 - 건축물현장정리비 조정(실제 공사면적) : 2,574㎡ ⇒ 1,110㎡(감 13,000,302원)
 - 먹매김 수량산출 오류 : 2,574㎡ ⇒ 1,110㎡(감 7,454,194원)
 - 필링난방(히팅판넬)면적 조정 : 감 32.27㎡(감 1,466,801원)
 - 지하1층 DREA AREA에 추가 공기순환공사 삭감(감 11,006,90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상4층 복도 벽의 마감재 조정 석고보드(THK 9.5MM)시공완료후 파손우려
⇒ MDF등 판벽이 파손 되지 않는 재질로 변경 검토
- 지상4층 창작공방의 화로를 지상 1층으로 이설토록 계획하면서 건물전면 페어그라스를 철거하고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 복도쪽에 있는 여닫이창으로 이설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됨.



통영시 2012년 해안가 ○○소나무림 종합방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목전정 및 시비 310본, 전망대 1식
방부목 계단 2개소, 잔디블럭 2개소
- 사업비 : 157,6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7,620	83,322	74,298	47.13 %

◆ 주요 심사내용

- 전정품 과다 등에 따른 조정

구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고(적용)
수량산출	잔디블록 설치	m ²	125	115	오기된 설치 면적 조정
단가산출	터파기	인	0.26	0.23	(보통+경질토사)/2
	잔디블록(잔디식재 면적)	%	42	29	잔디식재 면적 조정
	소나무전정	%	100	50	표준품셈 4-5-1 가로수전정의 약전정 적용(품의 50%)
	방부목 계단 및 목책 설치 - 건축목공 - 보통인부	인 인	6.285 0.682	2.8 0.8	조경공사 적산기준 15-4-4 목구조채설 치 간단구조 적용

- 장비 및 각종 자재운반시 과다 산정된 운반거리 조정
- 노임 도서할증(10%) 적용시 선원 도서할증 제외



◆ 원가분석시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과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간 불일치 여부
- 중복, 과다 계상된 물량, 단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근거 조정
- 특히, 소나무림 전정은 표준품셈 4-5-1 전정중 가로수 전정(낙엽수 강 전정)이 적용되어 있어 약전정(강전정의 50%)으로 적용하고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상록수 가산품 (30%)은 미 적용함.



사천시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감국 외 32종 182,270본 식재, 진입데크 1식, 목책 1,894m
- 사업비 : 35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50,000	255,888	94,112	26.89%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품명	규격	단위	심사요청(원)	심사결과(원)	비고
넙마		kg	2,000	1,650	
감 국	8cm포트	본	540	380	사급⇒관급
개 미 취	8cm포트	본	720	330	사급⇒관급
구 절 초	8cm포트	본	600	300	사급⇒관급
금 낭 화	10cm포트	본	1,260	760	사급⇒관급
금 불 초	8cm포트	본	540	380	사급⇒관급
꽃 무 릫	10cm포트	본	840	660	사급⇒관급
꽃 잔 디	8cm포트	본	600	300	사급⇒관급
꿀 풀	8cm포트	본	720	570	사급⇒관급
평의다리	10cm포트	본	900	760	사급⇒관급
노루오줌	8cm포트	본	720	720	사급⇒관급
동의나물	10cm포트	본	1,260	480	사급⇒관급
매발톱꽃	8cm포트	본	720	400	사급⇒관급
무늬동굴레	10cm포트	본	1,080	800	사급⇒관급
무늬맥문동	10cm포트	본	1,440	1040	사급⇒관급
바 위 취	8cm포트	본	540	380	사급⇒관급



품명	규격	단위	심사요청(원)	심사결과(원)	비고
별개미취	8cm포트	본	540	330	사급⇒관급
부 들	8cm포트	본	540	380	사급⇒관급
붓 꽃	8cm포트	본	720	470	사급⇒관급
속 새	8cm포트	본	900	510	사급⇒관급
술패랭이	8cm포트	본	540	520	사급⇒관급
앵 초	8cm포트	본	1,500	530	사급⇒관급
옥 잠 화	10cm포트	본	1,800	1,040	사급⇒관급
큰뽕의비름	8cm포트	본	540	570	사급⇒관급
털 머 위	10cm포트	본	1,260	600	사급⇒관급
털부처꽃	8cm포트	본	1,200	470	사급⇒관급
하늘나리	개화구	본	2,500	1420	사급⇒관급
할 미 꽃	8cm포트	본	900	610	사급⇒관급

- 합판거꾸집 1회 : 표준품셈에 따라 형틀목공 0.28인⇒0.22인, 보통인부 0.23인⇒0.12인, 사용고재 30%⇒23%로 조정
- 녹막이페인트칠 : 기구손료 2%는 녹막이페인트칠에 한한 것이므로 바탕 만들기에 기구손료 2%적용하였으므로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
- 진입데크 하부구조의 잡철물제작설치는 건설표준품셈의 건축부문 경량 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품으로 적용 조정
- 초화류식재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 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양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본당 조정공 0.00286인⇒0.002인으로 조정
-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3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조정 금액이 3억원 이하로 퇴직공제부금비는 삭제 조정
- 안전관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대)*1.24%의 값과 (재료비+ 직접노무비)*1.24%*1.2를 계산한 값중 관급자재대를 뺀 계산금액을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일반적으로 초화류의 가격은 견적단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달청 3자 단가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가격 적용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밀양시 ○○마을 하수도개량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선관로(D300~500mm)L=1,140m,
배수설비L=932m
- 사업비 : 443,160천 원
- 사업기간 : 2012. 6.~2013. 2.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43,160	369,050	74,110	16.72%

◆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기계(90%)+ 인력(10%)조합 단가
⇒ 기계(100%)+ 보조인부 품 조정 적용
-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0.2m³+ 램머80kg 단가
⇒ 기계0.2m³+콤팩트(1.5t) 조정 적용
- 모래부설 품 기계0.2m³+ 램머80kg 단가
⇒ 기계0.2m³+콤팩트(1.5t) 및 사이클타임 조정 적용
- 보도블럭 헐기 인력 품 단가
⇒ 굴삭기 0.12m³ 조정 적용
- 기타 소운반품 등 조정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및 작업조건에 부합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밀양시 독립운동가 흉상제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흉상제조 설치5기
- 사업비 : 90,261천 원
- 사업기간 : 2012. 6.~2012. 11.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0,261	70,293	19,968	22%

◆ 주요 심사내용

- 2012년 정부노임단가
⇒ 제조부문 단가 적용
- 비목별 경비적용
⇒ 제조부문 경비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제작 및 설치 과정으로 제조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거제시 ○○중계펌프장 수문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문 및 미세목스크린 설치 1식
- 사업비 : 356,810천원
- 사업기간 :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56,810	311,941	44,869	12.6%

◆ 주요 심사내용

- 주요 자재 조달가격 재조사 후 단가 조정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6종, 제수밸브 1종
- 견적 처리된 자재에 대하여 현지 방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견적단가 재 조정
 - 스크린 제조 및 설치 : 242,000천원 ⇒ 217,800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계약심사 시 타사의 견적 중 낮은 단가의 품목으로 비교·검토하고, 현지 방문하여 단가 재협의를 통한 실거래가격을 조사 원가 절감



양산시 ○○소류지 제당 보강공사 원가심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JSP천공 및 분사(검토층 : 1,680m), (호박돌층 : 45.5m)
- 사업비 : 4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2.3.16 ~ 2012.5.15

◆ 심사결과

(단위:백만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0	409	41	9.1%

◆ 주요 심사내용

- 제당보강 경암층(호박돌층)심도를 적정한 보강 심도깊이 조정하여 예산절감
- 전국 업체의 4대 관급 조달등록물품 사용 등 신뢰성 확보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
- 천공 및 분사 심사물량

(단위 : 원)

구분	경암(호박돌층)층	단가	금액	절감액	절감율
기존 적용물량	91m	237,741	21,634,431		
원가계산 물량	45.5m	237,741	10,817,215	10,817,216	50%

○ 시멘트 처리단가

(단위 : 원)

구분	시멘트	단가	금액	절감액	절감율
기존 적용물량	17,868포	3,630	64,860,840		
원가계산 물량	17,876포	3,300	58,990,000	5,870,840	9%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의령군 ○○산 권역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등산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등산로 및 데크 설치 1식
- 사 업 비 : 250,822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0,822	178,099	72,723	28.99%

◆ 주요 심사내용

- 등산로 목재계단 및 목재울타리에 대하여 표준품셈의 기준으로 조정
(조정품셈 12장 간단구조)

구분	요청	심사
목재치목 및 조립	· 재당 건축목공 0.00892인 · 재당 보통인부 0.00435인	· ㎡당 건축목공 2.8인 · ㎡당 보통인부 0.8인
목재가공 및 조립	· 재당 건축목공 0.0033인 · 재당 보통인부 0.0060인	· ㎡당 건축목공 2.8인 · ㎡당 보통인부 0.8인

- 각종 채집운반의 수직거리를 현장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실작업량을 8시간으로 상향 조정

구분	요청	심사
야면석, 고임돌, 막자갈 채집운반	· 수직거리 L=45m · T1 = 360분	· 수직거리 L=35m · T1 = 480분



- 소운반 적용거리에 대하여 설계도면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소운반 무게에 대하여 산정 오류 부분 수정

구분	요청	심사
A헬기 하착지 ~ GPS. 1	· 1.240km, 879kg	· 0.730km, 785kg
A헬기 하착지 ~ GPS. 2	· 0.380km, 8,789kg	· 0.380km, 7,854kg
A헬기 하착지 ~ GPS. 3	· 0.290km, 4,394kg	· 0.290km, 3,927kg
A헬기 하착지 ~ GPS. 4	· 0.124km, 5,273kg	· 0.134km, 4,713kg
A헬기 하착지 ~ GPS. 5	· 0.060km, 3,955kg	· 0.050km, 3,534kg
A헬기 하착지 ~ GPS. 6	· 0.032km, 9,438kg	· 0.005km, 7,778kg
B헬기 하착지 ~ GPS. 19	· 0.090km, 5,635kg	· 0.050km, 5,591kg
B헬기 하착지 ~ GPS. 16	· 0.122km, 1,395kg	· 0.122km, 1,287kg
B헬기 하착지 ~ GPS. 18	· 0.110km, 8,706kg	· 0.110km, 5,316kg
C정상 ~ GPS. 20	· 0.338km, 1,943kg	· 0.310km, 1,930kg
C정상 ~ GPS. 21	· 0.100km, 291kg	· 1.040km, 876kg

- 각종 목재 시설물 설치비용에 포함된 자재 할증 부분 수량 제외

구분	요청	심사
조망안내도	· 목재수량 58.10재 · 목재설치 58.10재	· 목재수량 0.178㎡ · 목재설치 0.151㎡
방향표지판	· 목재수량 13.94재 · 목재설치 13.94재	· 목재수량 0.049㎡ · 목재설치 0.045㎡
평 상	· 목재수량 250.00재 · 목재설치 250.00재	· 목재수량 0.420㎡ · 목재설치 0.395㎡
목 계 단	· 목재수량 8.40재 · 목재설치 8.40재	· 목재수량 0.028㎡ · 목재설치 0.026㎡
데크계단(B=1.2m)	· 목재수량 92.00재 · 목재설치 92.00재	· 목재수량 0.306㎡ · 목재설치 0.283㎡
데크계단(B=1.5m)	· 목재수량 98.00재 · 목재설치 98.00재	· 목재수량 0.341㎡ · 목재설치 0.314㎡

◆ 기타 착안사항 등

- 산림사업의 각종 토목설계에서 수량 산출에 오류가 빈번히 있고 단가 산출 작성시 표준품셈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 적용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 여부 검토



의령군 ○○지구 절개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굴곡도로 개량 L=119m
- 사업비 : 375,622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5,622	320,462	55,160	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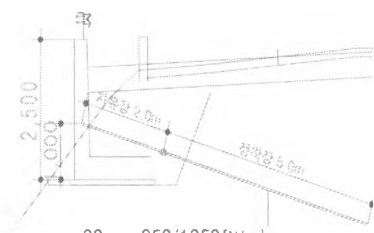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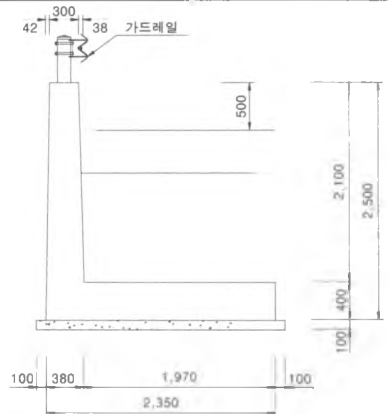
◆ 주요 심사내용

- 산마루 측구 상단 추락방지 난간에 대하여 철재 디자인 난간을 적용하였으나 미관 등을 고려가 필요 없는 최상단으로 일반적 메쉬형 울타리를 적용함

구 분	요 청	심 사
울타리	 • 디자인 울타리 H=1.2m, W=2.0m m당 166,400원	 • 메쉬형 울타리 H=1.5m, W=2.0m m당 59,000원(경간당 118,000원)



- 도로좌측 절개면 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옹벽에 대해 전도의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구앵커를 삭제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옹벽 저판 폭을 확대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

구분	요청	심사
L형옹벽	 32mm 950/1050(N/mm²) Bar Anchor C.T.C 1.5m • H=2.0m 옹벽 : 저판 L=1.50m • H=2.5m 옹벽 : 저판 L=1.85m • 영구 앵커 장착 24개소 (설치간격 1.5m)	 가드레일 • H=2.0m 옹벽 : 저판 L=2.00m • H=2.5m 옹벽 : 저판 L=2.35m • 영구 앵커 장착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원가가 불분명한 보강앵커 1식을 제외하고 표준단면은 아니나 구조검토를 통한 변형 단면을 적용하여 현장 적용가능 여부 검토



창녕군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민원해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석축쌓기 L=508m
- 사업비 : 152,2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2,200	119,261	32,939	21.6%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조정

공 종	구 분	석공	보통인부	백호	비고
깎잡석 찰쌓기	요 청	0.2	0.2	0	콘크리트 채움재 품 포함
	심 사	0.06	0.03	0.24	

◆ 기타 착안사항 등

- 2012년 건설표준품셈 깎잡석 찰쌓기 개정품 적용



고성군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0.365km, B=8.0m
- 사 업 비 : 384,800천원
- 사업기간 : 2012. 5. 01- 2013. 10. 31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4,800	375,400	9,400	2.4%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11.5→10.6%
 - 기타경비 : 5.8→6.2%
 -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12.3.6) 변동 및 공사기간 조정(18→12개월)으로 인함
- 단가산출 조정
 - 건설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조정
 - 폐콘크리트 처리단가 : 16,561원→12,075원/ton
 - 폐아스콘 처리단가 : 18,082원→12,785원/ton
 - 폐기물 운반비 적용기준 조정(중량기준→부피기준)
 - : 876ton→377 m³ (10,302원/ton→16,457원/m³)
- 수량산출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 198m³→170m³ (Δ28m³)
 - 아스팔트 절삭 수량이 별도 계상되어 있어 이중적용



- 역L형옹벽 채움석 자재수량 누락 : $195\text{m}^3 \rightarrow 239\text{m}^3$ (증 44m^3)
 - 사토(발파암) : $94\text{m}^3 \rightarrow 50\text{m}^3$ ($\Delta 44\text{m}^3$)
 - 이동식 크라샤(발파암 유용) : $195\text{m}^3 \rightarrow 239\text{m}^3$ (증 44m^3)

○ 공사기간 조정

-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를 위해 최소 공기를 반영 공사기간 조정(18개월 $\rightarrow$ 12개월)

○ 지정폐기물 분리 발주

- 폐석면이 포함된 슬래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 및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발주 할 수 있게 별도 내역 작성



남해군 ○○읍 도시계획도로(소로 2-13, 대판~KT)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시계획 도로개설(L=306m, B=8.0m)
- 사 업 비 : 355,800천원(도급액 183,210 관급액 172,590)
- 사업기간 :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55,800	343,100	12,700	3.57%

◆ 주요 심사내용

자재명	규격	단위	자재가격(원)			비고
			요 청	심 사	증 감	
회 발 유	무연	ℓ	1,940.42	1,671.00	감 269.42	조달청시설기준
경 유	저유황	ℓ	1,782.43	1,496.00	감 286.43	조달청시설기준
환 율		\$	1,147.45	1,153.30	증 5.85	조달청시설기준

- 지상가옥철거(스라브,스레트,블럭담장) 산근12,13,14호표

- 작업량(Q) : 2.45m³/hr → 3.3m³/hr
- 작업량(Q) : 4.6m³/hr → 5.9m³/hr
- 작업량(Q) : 4.6m³/hr → 5.9m³/hr

- 가설창고 1동 수량 감 산근31호표

- 시험비 물량 감 산근33호표

- 피복파형강관 → 일반 파형강관으로 변경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현장실정에 맞는 설계방안 강구



남해군 ○○면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지상 2~3층, 연면적 1,200㎡)
- 사업비 : 105,433천원
- 사업기간 :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5,433	88,510	16,923	16.05%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비 설계내역 요율 조정
 - 2종보통 상급을 중급요율로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사업 및 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적용 방지



남해군 ○○선착장 연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선착장 확장 L=198.2m, B=1.5m, 연장 L=7.0m, B=5.0m, 물량장 L=22.0m, B=8.0m, 계단 4개소
- 사업비 : 433,000천원(도급액 383,560 관급액 49,440)
- 사업기간 :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33,000	309,000	124,000	28.63%

◆ 주요 심사내용

- 수량변경 (선착장 연장길이 감소)

공종	규격	단위	수 량			비고
			요 청	심 사	증감	
피복석고르기(수상)	0.5m³ 이하	m²	655	778	증	123
피복석고르기(수중)	0.5m³ 이하	m²	460	360	감	100
사석고르기(수상)	0.015~0.03m³ 급	m²	649	654	증	5
사석고르기(수중)	0.015~0.03m³ 급	m²	458	241	감	217
피복석 투하	0.5m³ 이하	m³	4,572	2,316	감	2,256
사석 투하	0.015~0.03m³ 급	m³	943	877	감	66
상치레미콘타설	무근	m³	371	188	감	183

- 자재 규격 변경

구 분	요 청	심 사
레미콘	○25-21-12	○40-18-08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형여건에 따른 선착장 연장 길이 조정으로 예산절감



하동군 ○○ ○○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연석 포장(1,576㎡), 마사토 포장(2,802㎡)
- 사업비 : 470,290천원
- 사업기간 :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70,290	427,765	41,910	8.9%

◆ 주요 심사내용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품” 조정
 - 전석쌓기
 - 석 공 : 0.11인/㎡ → 0.14인/㎡
 - 보통인부 : 0.11인/㎡ → 0.00인/㎡
 - 잔디식재
 - 보통인부 : 0.3인/㎡ → 0.018인/㎡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조달단가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 철평석(부정형, T=50mm) : 72,000원/㎡ → 45,000원/㎡
 - 판 석(부정형, T=100mm) : 40,000원/㎡ → 30,000원/㎡
 - 배롱나무 : 178,000원/주 → 233,000원/주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대한 원가산출 내용 명확히 파악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원가재확인



함양군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취입보(L=52m) 개거(800*600) L=220mm
- 사업비 : 325,10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25,105	286,121	38,984	11.9%

◆ 주요 심사내용

-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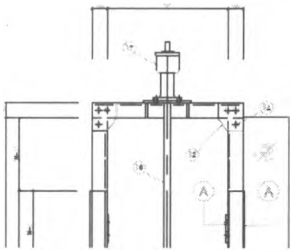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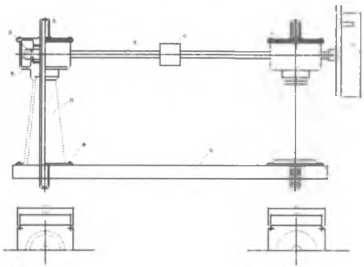
구 분	요 청	심 사
터파기(토사) (산근 1호표)	○ 터파기(작업효율) - 작업효율 E=0.55(불량) 단가:1,601원/㎡	○ 터파기(작업효율) - 작업효율 E=0.70(보통) 단가:1,259/㎡(감 342원)
잔토처리(토사) (산근 3호표)	○ 되메우기(작업효율) - 작업효율 E=0.6(불량) 단가:2,712원/㎡	○ 되메우기(작업효율) - 작업효율 E=0.9(양호) 단가:2,172/㎡ (감540원)
전석헐기 (산근 10호표)	○전석헐기 - 전석쌓기 기계품의 50% 단가:13,542원/㎡	○무근콘크리트깨기 적용 - Q = 5.9/0.79㎡/hr 단가: 9,932원/㎡(감 3,610원)
중기운반 (산근 44호표)	○중기운반	○중기운반(살수차 삭제) (감 374,936원)



○ 전석깎기용 전석 및 뒷채움잡석 현장유용

구 분	요 청	심 사
전석깎기	전석구입운반 351m ³	전석깎기용 자재 현장유용 (267.0m ³ 유용)-84.0m ³

○ 향후 용이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비 형식변경

구 분	요 청	심 사
일체식 문비	일체식 문비 4개소 설치 (STS304, 2000*600)	일체식문비 (2000*600) 2개소 (800*600) 2개소 설치 ※ 2000*600 규격은 연동형권양기 사용(유지관리 용이)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 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건설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용역

◆ 용역개요

- 용역비 : 3,396,427천원
- 용역내용 :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량 및 비용 총괄산정
- 용역기간 : 2012. 01. 01 ~ 12. 3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96,427	3,275,505	120,922	3.6%

◆ 주요 심사내용

-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이 2011년도에는 6년차 이면서 2012년도에는 8년차로 신청
 - ⇒ 2012년도에는 6년차 인건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상여금 490% ⇒ 400% 적용
- 간접노무비 행안부 공사원가계산(15.3%)
 - ⇒ 환경부 보고서 기준(5~15명당 1명)으로 10명당 1명(10%)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2008년도 환경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발표후 현재까지 기준이 되는 인건비 없음
- 우리군과 인구가 비슷한 인근 시·군을 비교 및 조사하여 현장과 현실에 맞는 단가 적용 제시



거창군 ○○읍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용역비 : 160,000천원
- 용역내용 : 하수관거 1.0km, 배수설비 645개소
- 용역기간 : 2012. 11 ~ 2013. 06.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0,000	102,400	57,600	36%

◆ 주요 심사내용

- 총괄사업비 산출근거 재작성 첨부(환경부 지침 참조)
-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 재검토(실시설계요율 1.22배 적용)
 - ⇒ 2004년도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가산요율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사업비 산출
- 과거의 하수관거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재 활용 여부 검토



합천군 ○○(외토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제방 축제 및 호안정비 L=618.0m
- 사업비 : 490,7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90,700	432,500	58,200	11.86 %

◆ 주요 심사내용

- 식생매트 조립 및 설치 품 조정
 - 2012년 개정된 품셈 적용
 - 강화호안고정핀설치가 식생매트조립 및 설치품에 포함되어 제외
 - 식생매트복토가 식생매트조립 및 설치품에 포함되어 제외
- 보조기충포설 및 다짐 조정
 - 단순 제방 위 자갈포설로 모터그레이더, 타이어로울러, 진동로울러, 물탱크 등 제외하여 굴삭기 포설로 수정
- 흙관부설을 기존 최심하상까지 계획되었으나 제방부만 설치
 - D800 L=79m ⇒ L=31m
 - D1,200 L=33m ⇒ L=19m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IV 부 록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23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241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287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WWW.KANGSANGNAMDO.GOV.KR

경상남도 규칙 제3007호
(2012. 10. 1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경상남도

(제정) 2008-09-18 규칙 제 2839호

(일부개정) 2012-10-11 규칙 제 3007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시·군
 - 마. 도 지방공기업
 - 바.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개정 2012.10.11>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그 밖의 시·군비사업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신설



2012.10.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0.11>

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0.11>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0.11>

2. 삭제 <2012.10.11>

가. 삭제 <2012.10.11>

나. 삭제 <2012.10.11>

다. 삭제 <2012.10.11>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신설 2012.10.11>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1>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2.10.11>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0.1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0.1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0.1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11>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



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삭제 <2012.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11>
-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조치)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1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2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3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4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예산자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 4. 품셈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5. 그 밖에 참고자료(시행품의서, 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발신명의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호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기타			

◦ 물품구매 개요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제조원가계산서

○ 수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노 무 비	소 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소 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0 0 0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예산자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 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발신명의



[별지 제3-4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자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 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 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예산자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 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



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 (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



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전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



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

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전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2 조 원가계산

1. 제2조원가

제2조원가는 제2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2 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2 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2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2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



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



계약(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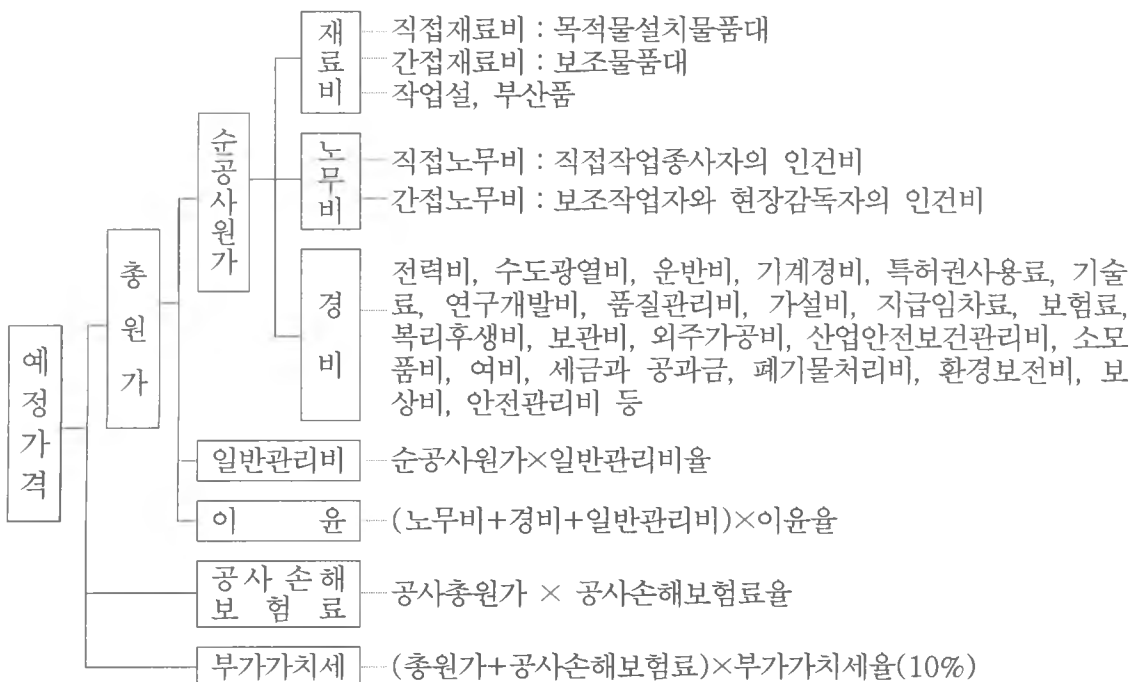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text{공사 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



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text{직접공사비} = \text{수량} \times \text{공종별 단가}$$

-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
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
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
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
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
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
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
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
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



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 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 조 원	월 1,120,99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이며, 201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소 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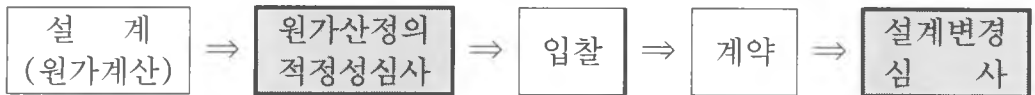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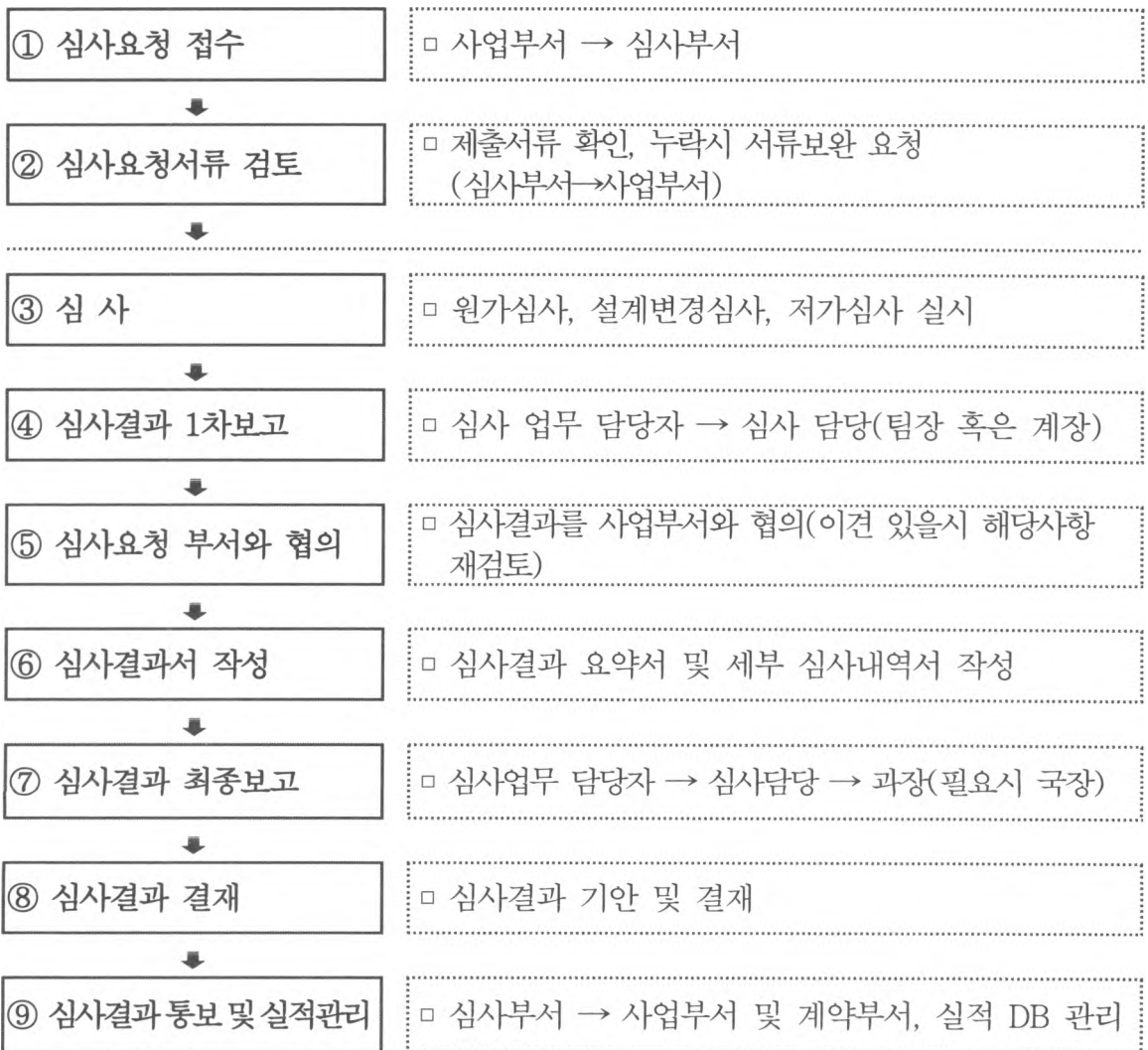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



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
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보충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체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원(사·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정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와 계약부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횃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